## 제356회국회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9 호

국회사무처

#### 2018년2월28일(수) 오후 3시

#### 의사일정

- 1.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2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2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아동수당법안(대안)
-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3건)
- 68.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69.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70.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 71.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 상정된 안건

1.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 5
О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인사	. 6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6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7
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경진·김관영·김광수·
	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손금주・송기석・유성엽・윤영일・이군현・이동섭・이용주・
	이용호·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7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권성동·강석호·
	김선동・김재경・김정재・나경원・민경욱・박성중・신동근・신창현・안상수・유민봉・윤상직・
	윤재옥・이명수・이용호・장제원・정용기・정진석・주광덕・주호영・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위성곤·신창현·이찬열·윤영일·이학영·황주홍·홍문표·김현권·정재호·변재일·
	이수혁・송기헌・유승희・심기준・송옥주・이용득・박영선・강병원・홍영표・강창일・오영훈・
	김상희·심재권·이원욱·소병훈·기동민·김두관·설훈 의원 발의)
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김영호·백혜련·서영교·소병훈·이원욱·인재근·전혜숙·한정애·황희 의원 발의) 8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원욱·김성수·박주민·
	박재호・유동수・소병훈・김현권・김철민・김정우・최도자・민홍철・금태섭・권미혁・정성호・
	손혜원·정인화 의원 발의) ···································
1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8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9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9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소병훈·김영호·박찬대·김정우·남인순·윤관석·오제세·정성호·신창현·
	김성수·박정·추미애·민홍철 의원 발의) ······9
1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0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0
1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0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10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11
2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
	김성수・김종대・노웅래・박남춘・박용진・박정・서영교・소병훈・신동근・안규백・위성곤・
	윤관석·이동섭·이상돈·이종걸·이해찬·인재근·채이배·추혜선·한정애·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12
2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12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13
2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13
2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13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13
2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박남춘·
	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13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14
30.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윤영일・김경진・이개호・손금주・김철민・
	주승용·유동수·이채익·김동철·김수민·박주선·이동섭·송기석·최경환(국)·권은희·

	인재근·천정배·조배숙·홍익표·김규환·김성원 의원 발의) ···················14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제출)······1
3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14
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김정우·위성곤·표창원·윤관석·
	박정·전해철·박재호·신경민·권미혁 의원 발의) ···································
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
	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16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
	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16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
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
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18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20
5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20
5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송옥주ㆍ정춘숙ㆍ백재현ㆍ
	추미애·이용득·김정우·유은혜·김민기·김병욱·고용진·안민석·윤관석·김해영·권칠승·
	박경미·홍의락·오영훈·박정·박남춘 의원 발의) ·······22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경대수·김재경·이주영·오신환·
	정운천·이채익·정갑윤·이은재·홍일표 의원 발의)22
6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정갑윤・이현재・윤상직・송희경・여상규・엄용수・강효상・유민봉・나경원・
	김성태 의원 발의)
6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조경태·곽대훈·박대출·
	정운천·김정재·권석창·김도읍·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 ···································
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22
6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22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22
67.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3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희
	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장 제출)2(
68.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정
	제출)
69.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4
70.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 … 25
71.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26
38.	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전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
4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

41.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송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김민기·김정우·정춘숙·권미혁·윤관석·윤소하·
	송옥주·위성곤·전혜숙 의원 발의)65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5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6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6
4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6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66
5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7
5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67
5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신창현·추미애·
	서형수・손혜원・신용현・김성수・송옥주・박경미 의원 발의)67
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67

(15시1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2월 27일 김동철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문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와 김성태 의원 외 109인으로부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대통령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 로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민기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 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15시1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총장(김

성곤) 임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원내 지도부와는 협의를 하 였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오늘 다시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안건은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성곤을 임명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 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임명승인 대상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 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 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 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정춘숙 의원, 김규환 의원, 김삼 화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 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 시면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 화면에 표시됩 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 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16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투표종료)

그러면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7표 중 가 196표, 부 25표, 기권 6 표로서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인사

○의장 정세균 그러면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인 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성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 휘하여 국민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국회의 대국 민 서비스에도 저희 사무처가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신임 사무총장께서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를 당부드립니다.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5시38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종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종석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위원회안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홍익표 의원, 민병두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우택 의원, 전해철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집합투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고 전담중개업자의 신용공 여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며 삭제된 조항을 인용 하고 있는 대주주 관련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불 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 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2인, 기권 3인 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5시4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 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광온**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 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강병원 의원, 신용현 의원, 어기구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 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 ·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공 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

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 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 지,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또 채용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 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경진·김관영·김광수·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손금주 · 송기석 · 유성엽 · 윤영일 · 이군현 · 이동섭 · 이용주・이용호・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권성동· 강석호 · 김선동 · 김재경 · 김정재 · 나경원 · 민경욱 · 박성중 · 신동근 · 신창현 · 안상수 · 유민봉 · 윤상직 · 윤재옥 · 이명수 · 이용호 · 장제원 · 정용기 · 정진석 · 주광덕 · 주호영 · 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 표발의)(위성곤·신창현·이찬열·윤영일·

이학영·황주홍·홍문표·김현권·정재호· 변재일·이수혁·송기헌·유승희·심기준· 송옥주·이용득·박영선·강병원·홍영표· 강창일·오영훈·김상희·심재권·이원욱· 소병훈·기동민·김두관·설훈 의원 발의)

- 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영호 · 백혜련 · 서영교 · 소병훈 · 이원욱 · 인재근 · 전혜숙 · 한정애 · 황희 의원 발의)
-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진선미·이원욱·김성수·박주민·박재호·유동수·소병훈·김현권·김철민·김정우·최도자·민홍철·금태섭·권미혁·정성호·손혜원·정인화 의원 발의)
- **1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시4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6항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영진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의 날의 일자를 매년 8월 8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 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되 관련 소요비 용에 국고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위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정부평가 업무에 의무적으 로 반영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 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 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 진가속도 계측기 관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비용 보조 근거는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배우자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법(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 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부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인 재해보상급여 수준을 92~93%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의 기준을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5인으로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2 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 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지 진 ·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10 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 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소병훈·김영호·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13 박찬대·김정우·남인순·윤관석·오제세·

정성호·신창현·김성수·박정·추미애· 민홍철 의원 발의)

- 1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 1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시54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표창원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표창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혼이 살아 숨 쉬는 동시에 청년들의 열정이 샘솟고 있는 용 인정 출신 행정안전위원회의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경우에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동승자가 운전 중 안전띠를 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는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가 포함되므로 피난구조

설비로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시 소방 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승강기가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선 사업자와 도선 사업자가 승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반드시 선실·통로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 대한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주선**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도 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화 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대 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소 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승 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유 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시02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0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재수 위원 나오셔 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재수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재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교육훈련 기 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 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넷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 습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를 부과하되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전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3인, 기권 14 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1.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2.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기동민· 김병기·김병욱·김성수·김종대·노웅래· 박남춘·박용진·박정·서영교·소병훈· 신동근·안규백·위성곤·윤관석·이동섭· 이상돈·이종걸·이해찬·인재근·채이배· 추혜선·한정애·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

# 2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시06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1항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3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 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중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심사보고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중로 존경하옵는 박주선 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김중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안(대안)은 김동철 의원 2건을 포함한 최경환 의원·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진술·자료제출 관련 규 정 및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청 문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망원인이 분명하 지 아니한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 회'를 설치하여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 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 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김중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 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12 인으로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7인 으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8.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철민· 박남춘 · 서형수 · 박주민 · 이재정 · 유승희 · 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 (16시12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4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산지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산림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 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 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만희 존경 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 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한 사 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 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지 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 등을 하는 경우 중앙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 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 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발 전기금의 용도에 어업협정이 지연되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 어장에 출어하는 출어비용의 보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동 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산 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수 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수 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0.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장병완·윤영일·김경진·이개호·손금주· 김철민·주승용·유동수·이채익·김동철· 김수민·박주선·이동섭·송기석·최경환(국)· 권은희·인재근·천정배·조배숙·홍익표· 김규환·김성원 의원 발의)
-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 발의)(이훈·김정우·위성곤·표창원·윤관석· 박정·전해철·박재호·신경민·권미혁 의원 발의)

### 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8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9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 융합산업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무역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 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위 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김경수 존 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위원 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 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박찬우 의 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지역발전' 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를 바꾸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당연 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자를 포 함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원체계를 정 비하였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산업 진흥법 안은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WTO 보조금 협정의 특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명을 '광융 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광융합기술'로 변경 하고, 정부재정 부담 의무규정도 삭제하거나 임 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 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홍의락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 안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 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무역보험에 대한 출연금을 자본 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 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제조·신고·수 리 · 통지의 의무 ·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 로, 거짓 · 부정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 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여기 달리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8인 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0인, 기권 7인으로서 광 융합산업 진흥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7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이만희·이헌승·정태옥·지상욱·이명수· 김성원·김정재·박명재·이채익 의원 발의)
- 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 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 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16시26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35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3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재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박재호 존 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재위탁받은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 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포

상 · 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해 동반성장위 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 사유를 현행 '부득 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것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 한 이의 제기 및 과태료 체납 시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0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중 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 가 진행 중이므로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 정 제48항부터 제51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시31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4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한정애**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그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 록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서 신규 화학물질은 연 간 0.1t, 기존 화학물질은 연간 1t 이상 제조 또 는 수입하는 경우 제조량, 수입량 그리고 고독성 물질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등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였으며 개별 사업자의 취급 량이 많지 않아도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제품관리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등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첫째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과 같이 유해생물의 제거기능이 있는 살생물물질과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완영·김현권·홍문표·황주홍·김성찬·김현권·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서, 첫째 2014년 법 개정 및 2015년 시행하며 3년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불구하고 무허가 축사 등의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식품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처분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각종 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개 사육시설 의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습니다.

둘째, 위탁사육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의 경우와 동일 기간 동안 벌칙 적용이 유예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한정애 위원님 잘하셨답니다.

그러면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2인, 기권 6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13 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 위원장 제출)

(16시37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5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임이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기준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태 의원, 이철희 의원, 홍영표 의원,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 신창현 의원, 박홍근 의원, 이 찬열 의원, 송옥주 의원, 소병훈 의원, 강병원 의 원, 이언주 의원,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장・ 휴일 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가 초과근로 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하게 하되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장은 2018년 7월 1일,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0 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각각 개정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 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 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 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 해서는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 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 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 계, 2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 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되 근로시 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근로 일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고용노동부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도

록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로 실태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칙에 규정하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 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종훈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 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 였던 로버트 오웬은 이미 1817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했습니다.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가 주도하여 만든 산업공동체에서는 8시간 노동 제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 하게 벌어졌습니다. 130여 년 전의 일이기도 합 니다. 노동계는 이날을 기념하여 노동절을 제정 하고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간 노동제가 모든 나라에서 곧바로 시 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법 으로 정해지고 현실에서도 정착되어 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8시간 노동제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주 35 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주 40시간 노동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 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 그리고 예외조항들은 법 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7 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 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60시간이 더 깁니다. 세계 최장 시간이라는 노동 현실을 두고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재벌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 제발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이 자녀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야근, 휴일근무 하지만 40시간만 일해도 먹고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이제 손봐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 심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또한 맞 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 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68시간 노동을 1주 7일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 다.

하지만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할증 200%는 이미 법원이 하급심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토록 서둘러 개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서 법안을 개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5인 이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로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에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 런 사업장들이 아닌가요?

이런 사업장을 빼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5개 업 종도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 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세부적 내용 외에도 이 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숙의 민주주의와 강행의 적용 잣대와 기준, 원칙이 무

법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해 당사 자와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합니다.

엇인지 저는 답답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투표 안 하세요?

(웃음소리)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 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시49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5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 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새만금사업 추 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안호영**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출신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송옥주 의원, 이우현 의원, 정동영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 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불 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불법증차 를 한 운송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 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 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 가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정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 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의 매립사업 등 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운 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출자, 공사채 발행, 사 업 범위 및 손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 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56인, 반대 9인, 기권 23 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9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 가 진행 중이므로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 정 제60항부터 제66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해찬·송옥주·정춘숙· 백재현 · 추미애 · 이용득 · 김정우 · 유은혜 · 김민기 · 김병욱 · 고용진 · 안민석 · 윤관석 ·

김해영·권칠승·박경미·홍의락·오영훈· 박정·박남춘 의원 발의)

- 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경대수·김재경·이주영· 오신환·정운천·이채익·정갑윤·이은재· 홍일표 의원 발의)
- 6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정갑윤·이현재·윤상직·송희경·여상규·엄용수·강효상·유민봉·나경원·김성태 의원 발의)
- 6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최연혜·조경태·곽대훈· 박대출·정운천·김정재·권석창·김도읍· 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
- 6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사법위원장 제출)
- 6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사법위원장 제출)

(16시55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60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법원조직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 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출입국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상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윤상직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 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법률안에 대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진태 의 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다음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찬열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 원회 대안,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 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 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주선** 윤상직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 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5인 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2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특 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기권 6인으로서 부 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통 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기권 9인으로서 형 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7인, 기권 8인으로서 출 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7.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3건)(국회운영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 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환경 노동・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시02분)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67항 2017년도 국 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3건)을 상정합니

이들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13개의 상임위 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 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3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1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상 13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 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68.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 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제출)

○**부의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68항 한국교육방송 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 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성수** 존경 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출판 유통구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 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EBS의 자체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습교재 출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학습교재 유통과정에서 중대한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EBS가 교재 물류업체에 보관된 지난 1년간의 재고 물량을 자체 조사한 결과 6만 1353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전 교재들은 이미 폐기돼 재고 검증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횡령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BS의 학습교재 유통과 관련한 비리와 감독소홀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출판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 투표하시는 동안에 안내말씀 드리겠는데 요. 오늘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차질이 생겨서 제가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이번 69항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로 좀 와서 저와 의사일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당의 원내대표, 만약에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수석부대표께서 이 자리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2 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9.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 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07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69항 2017년도 보건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 구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순례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보건복지위 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 기관과 업무에 대하여 3건의 감사요 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과 한국공공조직은행의 기관 운영상 발생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임직원 복무기강 해 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2건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만연한 직원들의 외부 강의, 부적정한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하여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외부 강의 실시 및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 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2017년도 보

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대표의원 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 각 교 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그만 협의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자, 의원 여러분! 원만하게 원내대표들과 협 의가 잘 되었으니까 일단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 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15여 건의 법률안에 대해 서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속개를 해서 그 안 건을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법 안 통과를 안 하고 무슨 시작을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자, 말씀 좀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 있음)

일단 예정된 의안을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가 지금 약속된 안건 중에 처리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 으면 현안질문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70.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 **시의 건**(의장 제의)

(17시1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70항 김영철 북한 노 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빠 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이 가능하다 고 보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만 의원들이 자리를 지켜 주셔야지요. (「정회해서 법사위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셔서 의결

정족수를 유지를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오늘 8 시나 8시 반쯤까지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이석해서 만약에 의결정족 수가 되지 않아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식을 가지 고 자리를 꼭 지켜 주셔서 의결정족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위원들 빨리 오시도록 하세요.

이 안건은 2건의 긴급현안질문 요구서에 대해 서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을 한 것으로서 그 실시 여부를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방부장 관 등 총 6인의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법사위가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만약에 금방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내 용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중단할 테니까 그 런 줄 아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지 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 어떻게 할까요?

(○우원식 의원 의석에서 ─ 협의한 대로 진 행하시고요.)

예. 원내대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어 제 오늘 거치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께 서 의사일정의 원만한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법사위를 바로 좀 열게 해 주십시오.)

법사위 열어야지요, 빨리.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1.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7시20분)

○의장 정세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에 의해서 아직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되는 초기부터 처리를 해서 그 안건이 본회의에 도달해야, 그래야 현안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3 교섭단체대표들 간의의사일정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한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같은 동포로서의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계는 북한의침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 보위를지키되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원칙임을 명시하고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북한인을 만날 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모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

이해서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가 명을 하고 있고 헌법 제66조제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9조, 대통령이당선되어서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명하는 정신에 따라서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폐막식 연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세계에 새로운 다리와 협력을 놓는 것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흐 위원장이 언급하듯이 남북 간의 단일팀 형성과 북한의 참여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의 커다란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김영철 북한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모든 세계의 언론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져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총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외국 언론이나 국내외적 평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의 기대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의 좋은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몇 가지 대 표적인 언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런 언론이 국내에도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것 은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IOC 조정위원장께서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올림픽이었다 이런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북한팀 참가, 단일팀 형성에 대해서도 전부 평가가 긍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선수 당사자들도 헤어질때는 눈물로 헤어지고 그랬던 그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송영길 의원** 총리님, 죄송합니다.
- ○국무총리 이낙연 됐습니까?
- ○송영길 의원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도 오늘…… 아니,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제일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팀의 참가가 어떠한 효과 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일단 지난해 하반 기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고 했 고요, 나중에 미국도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는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 다

다행히 북한의 참여 이후에 92개국에서 2900명 이 넘는 선수들을 보냈고요. 임원까지 보낸 것을 합하면 95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와서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국가와 최대 선수들이 참 여한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참여가 안전한 올림픽을 보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 ○송영길 의원 장관님, 올림픽의 유래가 그리스 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정으로 전쟁보다는, 전쟁에서 서로 창을 던지던 것을 멀리 던지기로 바꾸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풀어 보기 위해서 만 든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그게. ○송영길 의원 원래 올림픽 때는 하던 전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멈췄었지요?

○송영길 의원 그것 한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대 올림픽이 전 쟁을 멈추고 올림픽 기간 동안은 평화의 기간을 갖자고 해서 사람을 죽이던 창을 내려놓고 그 창 을 누가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면서, 또 백병전을 벌이면서 전쟁하던 데서 벗어나서 레슬링을 하면 서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경기를 통해서 있는 힘들을 자랑하되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유엔에서 휴전결 의안을 채택하고 거기에 유엔 전 회원국들이 동 의를 해 줘서 이번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 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길 의원 맞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김 영철 통전부장이 온 목적이 우리 폐막식에 참가 한 북한 대표단으로 온 것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폐막 식 참석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송영길 의원 그런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군 사회담 대표로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 ○송영길 의원 우리 지금 현재까지 천안함 관련 보고서에서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김영철이 적시 된 사실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가 알고 있기 로는……
- ○송영길 의원 없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적시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이었 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 특히 김영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정부가 그 렇게 해서 적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송영길 의원** 현재까지 북은 천안함이 자신들 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 습니까? 소형 어뢰정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 어느 소속의 누가 구체적 책임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영길 의원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보시지요.

만약에 북한의 김영철이 주범이면 김정은은 종 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리상 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김정은 위원장이 종범이 될 수는 없겠지요.
- ○송영길 의원 북한 체제상 총괄책임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방남……
- ○송영길 의원 천안함 같은 그러한……
-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 천안함 같은 사고.
- ○송영길 의원 무력의 그런 도발행위가 최고책 임자의 동의와 지시가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

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런 것은 최고책임자 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영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10·4 선언 때 됐는데 이게 김무성 전 대표를 맞고 있는 황병서, 최룡해의 모습입니다. 군복을 입고 왔고 실제로……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황병서, 당시 넘버 2인 총책임자와 아주 긴밀하게 귓속말을 나 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시안게임 폐막식 현장입니다.

그다음이요 김관진, 여기 다 김양건까지 모여 서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언론을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님이나 우리 당국에서다 같이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것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들어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천안함 관련해서 그 어떤 책임자 문제를 못 들어 주는 건지……

○**송영길 의원** 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이건 됐고 요.

장관님,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김영철 현안질의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입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의 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억의 로비를 이명박대통령 가족들에게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송영길 의원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정도의,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의혹이 있으면 당장 소환하여 조사해서 처리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송영길 의원 더구나 국민들도 정말 너무나 스 트레스 받고 있는 사안인데 엄정하게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 됐습니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국의 선제공격이 실시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많이 안정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게 아직 항구적이라고 말하기는 빠르지만, 그러나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가 됐고 긴장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번에 이루어진 남북 간에 대화의 창이 북미 대화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건과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번에 김영철 방문단이 와서 대 담을 통해서 뭔가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정확히 표명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 관계 장관들도 여러 기 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이 미 중요한 것은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첫째는 북미 대화에 나서 달라.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분명히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전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김영철 단장도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야당에서는 김영철, 이번에 통전부장의 방남─방남이냐 또 방한이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에 대해서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 직접 와서 이렇게 미국과의 대화에의사를 표시한 것은 한반도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뭔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

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영길 의원 북한도 한반도의 영토인 것이지 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오는 게 방한입니까, 방남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는 '한국과 북한'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방한이라 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방한이 든 방남이든 우리도 갈 때는 방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가 흔히 남북한이라고 부르지 한북한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송영길 의원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과의 관계를 국 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영길 의원** 저는 이런 것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폐막식 날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들을 다 들뜨게 했던 컬링 결승전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영길 의원 그때 야당 의원들께서는 컬링 결 승전 응원을 하지 않고 휴전선까지 가서 김영철 방남 반대 시위를 했는데, 김영철…… 2014년 당 시의 군사회담이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이 2014년 10월 4일 날 아시안게임 때 우리 남쪽을 방문했을 때 한 번이라도 천안함이나 연평폭격 도발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총리께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록 없습니다. 천안함은 거 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공식적 기록에 그게 명시되어 있 는 게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영길 의원 김영철이 천안함 주범이라는 것 도 명시된 게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 미국에서 김영철을 개인 제재를 했을 때 천안함과 관련돼서 적시해서 제재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 과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방문 금지가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다는, 천안함 관련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 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송영길 의원 만약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대 한민국 영토, 일종의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 토에 대한 폭격이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 한민국헌법, 평화적 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위반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적인 문제까지 제가 답변 드릴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한 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 린 바가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인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가 한 · 인도 의원친선협회 회장이어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을 모시고 한 · 인도 비즈니스 포럼회를 다녀왔습 니다. 거기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님을 만났 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 원장으로서 평창 유치와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최순실의 조종을 받은 김종 문화부차관의 국정농단 행위로 갑자기 해임이 됐 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누슬리사란 이상한 회사를 이권에 개입시키려다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열심히 노력해 온 조양호 회장을 이유 없이 해임시킨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 미지도 나빠지고 또 남북한의 긴장고조로 정말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대 통령께서 일관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 픽으로 치르겠다는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열 심히 돕고 모두가 도와서 역사상 최대의 평창 동 계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마 지막 폐막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이렇게 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 간의 소중한 창, 이것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께서도 다 만났던 분들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더 구나 평화라는 올림픽의 상황에서 왔을 때 맞아 들여서 이 계기를 남북의 평화의 계기로 만든 것 은 국가 발전의 이익에 너무나 부합한다라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북의 도발행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평화를 만드는 계기에 불필요한 시비를 거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꼭 통과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 는데 지금 정개특위가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7 시쯤 정개특위,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본 회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합의가 이루 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그래야 3월 2일부터의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어 떠한 경우에도 오늘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시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교섭단체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12건입니다. 그래서 그 12건 또한 법사위에서 힘들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오늘 처리에 차질이 없고 또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간에합의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모두 또 교섭단체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 안성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또 국방위에서 수고하셨는데.

####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김학용 의원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북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국가 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치달아 가는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특사 단장 자격으로 온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 군인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으로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면 다들 환영하고 그럴 텐데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자존심이상하고 울분이 상하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연평도 관계자들이지금 모두가 다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관여된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관여된 당사자인가 아닌가 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용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함을 피격한 소형 잠수함이 정찰총국 소속이고 정찰총국장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철이 있었던 것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맞습니다.

○김학용 의원 우리가 북한에 실효적인 법적 효 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철을 잡아다가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 태영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김영철이 바로 주범 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 김영철이 실제 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사건 그리고 비무 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이것 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이 한 것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 북한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 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을 한다 하면 그것은 북한이 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김학용 의원 제가 기가 막힌 게 통일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고 당시 정찰 총국장이 김영철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관 련자를 지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국정원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 로 따지면 북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요.

당연히, 정찰총국 소속의 잠수정이 그랬기 때 문에 그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총국 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정찰총국의 요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정찰총국장이 한 게 맞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보지 않았으니 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정부에 서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찰총국장을 역임을 했는 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과연 그런 사람보다도 더 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학용 의원 군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 는 것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주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당연히 그 당시 북한을 지배했던 김 정일이 관여했다고 봐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 겠습니까?

최근까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해 서 국방일보에 게재한 장병 대상 정신교육 자료 를 보면 김영철을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국방부 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시할 때 는 언제고 또 필요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 통일부는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 나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이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에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 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적인 북한의 목소리는 듣 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로 가고 우리는 한미 군사 훈련 연기하면서 올림픽 하루 전날 열병식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김영철이 온다고 그러면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 달라고 그것 말 한 마디 못 하는 정부가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 런 상처 입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 의 향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미 천안함……

○김학용 의원 이미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 상황 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일 행이 넘어와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가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애국자들인데?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미 유감을 표명하고 또 해군총장을 시켜서 위로하라고 하고 시간이 나 면....

○**김학용 의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 위안부랑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한 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사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 백 번이고 만 번이고 하는 게 맞 는 거지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장내 소란)

목소리 나보다 더 큰 사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통일대교가 아니라 전진교를 통 해서 들어왔습니다.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진교가 있는 데는 접적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진교 자체가, 바로 그 부대의 구호가 전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관계기관회의를 했다는데 통일부,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군사도로를 지나가는데 미리 해결하고서 국방부에는 10시에 통보만 해 줬어요.

장관님, 이것 국방부장관으로서 강력히 항의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 습니다.

○김학용 의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는 정보로는 청와대 김도균 국방비서관이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라'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출입경사무소에서 1사단에 요청해 가지고 1사단이 국방부에 보고하고 제가다 보고받고요. 그다음에 김도균이 뭐 했다는 것은 저는 아직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용 의원 전진교는 네이버나 구글에도 안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데 육칠 km 정도 되는 것을 29분 동안 천천히 가면서, 하다못해 차에다가 커튼을 치든지해야지 적군의 수괴에게 우리 군사시설 다 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 시간 관계 때문에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 김영철 방한 사건에 대해서 국방 부 차원에서 어떻게 김영철이 군사구역을 시찰하 게 됐는지 또 절차적인 정당성의 하자는 없었는 지 조사를 벌여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 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물론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하고 2002년도비군사화를 다 시킨 다음부터 그 지역을 확인한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다시 한번 장관께서 현지를 정확 히 시찰을 하고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그리고 장관님, 한미 군사훈련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은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3월 18일부터 4월 초 사이에 양국이 정확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장관님 말씀은 감사한데, 보면 문정인인지 뭔지 특보라는 사람은 어제 워싱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된다'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랜달 슈라이버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이것도 패럴림픽 폐막후에 실시하겠다'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양국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뭐 그렇게 매티스 장관이랑 약속한 게 중요하십니까, 이미 다하고 있는데? 군사훈련 실시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과 제 입장이 다르고 또한미 간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의원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은 4월 초에 예정대로 실시하고 8월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담가디언훈련은 축소 내지 취소하는 걸 실무자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김학용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 의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이어 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김학용 의원 장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 반도 비핵화를 이룰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용 의원 이게 5200만 국민들의 생사가 달 린 문제입니다. 이걸 몇 사람만 감싸고서 비밀처 럼 하고, 호텔 안에 있어 가지고 만날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부에서 발 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들이 왜 불안 해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주사 파 내지 친북 인사 출신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 떻게 끌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 다, 그래서 보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정부 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 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재 비핵화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진 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국민들에 게 소상하게 알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학용 의원** 총리 나와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지만, 그런 방 안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 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 개선이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 별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기, 그것 을 논의하기 훨씬 이전에 북·미 대화를 하고 비 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춰 달라 하고 북측 단장한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김학용 의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정 대통령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닙 니다.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 국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개혁 신당인 바른 미래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 히 뛰고 또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 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김영철이 방남한다라는 얘기 를 들었을 때 천안함 유족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 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국민들의 정 서가 생각이 나서 저도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 18과 세 월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 듯이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슬퍼하고 분 노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는 좌파・우파, 보수 ·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의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 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 니다.

만약에 북ㆍ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 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 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 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 · 미 대화의 개시 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정찰총국의 소행이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이 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답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 말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연어급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그 잠수함의 소속이 정찰총국이다, 그것은 말 씀드렸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 잠수함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종합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면 정찰총국의 총국장이 김 영철이니까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 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과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 정권이나 다 계속해 온 것은 '확인할 수 없다'이런 논지가 있었기 때문 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자꾸······

'김영철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것의 폭침이 김영철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아주 어 리석습니다. 어쨌든 김영철이 정찰총국의 총국장 이었고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된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굴욕적으로라도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수 없다'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논란이되는 거예요. 이런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논란은계속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을 관할하시니까요. 저는 이것이 군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징병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방부장관은 좀 다른 모습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의 지휘 체제는 최고의사 결정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난번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언주 의원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 요. 군통수권자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런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군의 사기를 생각하는, 군의 명예를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무위원은어떤 독립된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천안함유족회와 예비역전우회 성명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봤습니다.

○이언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 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요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번의 김영철 방남이 비핵화 진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의문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2월 22일에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으로 연락이 왔을 겁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당일 바로 정부는 수용을 결정했는데, 이런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수용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전례를 살폈을 겁니다. 2014년 군사당국자회담의 수석대표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이언주 의원** 그 군사회담하고 지금 이 상황하

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 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북핵의 완성의 시기가 거 의 초치기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북한의 대화 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인식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체크는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라는 점이 평가됐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나 이런 게 미리 사전에 타진이 있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미국과 협의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협의를 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미국이 반대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아까 군사회담과 올림픽이 다르다고 말 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이언주 의원** 올림픽 폐막식을 단순히 참여했 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신 게 어떤 대 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기회에, 이 계기에 그 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적절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당연히 고려······

○이언주 의원 그만한 어떤 북한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남 공작 총괄을 하는 사 람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 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하 고의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타이밍상 적절한 사람이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과 협의를 했고요.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 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 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펜스가 그전에 왔다 가셨는데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했어 요. 그리고 또 김영철이 방남 한다고 했을 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천안함기념관을 가는 게 좋겠 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언주 의원**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대상 입니다. 아까 천안함 폭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의 미국 행정명령에 천안함 폭침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 제재가 굉장 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김영철 단장의 경우 에는 미국 방문이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외환거래, 금융거래, 그리고 만약 남쪽 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동결 이 대상이지 방문 금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방남 하 는 게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방남 하는 게 천안함 기념관을 가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강조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독자제재 를 받은 사람이 굳이 이번에 내려와서 하는 게 무슨 북 · 미 대화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관점 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의 아무 권한도 없는 분 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의미가 반감됐을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가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건 또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 해서건 얼마나 핵심적인 요인인가를 설명은 충분 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북ㆍ미 대화의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야, 뭐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 정도 용의가 있으니까 내 려왔겠지요.

저희는 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북한이 방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이언주 의원 김영철 같은 사람을 내려보내면 서까지.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싶었 을 테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 리고 물론 우리한테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리고 우리가 할 말, 우리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 달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에, 그러니까 남한 정부에 살려 달라고 매달리러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제재의 구멍을 피해 갈 수가 없고 계속 압박해 조여 들어오는데 그것을 구해 줄 수 있는 게 남한이라고, 남한 정부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러한 사정이 역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언주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 지만 거꾸로……

○국무총리 이낙연 아주 넉넉한 처지라면……

○**이언주 의원** 거꾸로 이 제재의 구멍을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 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최근에 보면 조셉 윤이 사임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언주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해석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나름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리고 또 NYT의 보도를 보면 시리아에 북한의 화학무기 부품들이 수출되는 것 들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 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났을 것이고요.

○이언주 의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집중 조명이 되었을까?

○국무총리 이낙연 미국 나름의 의도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국면과 상충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이 기간 동안에 대화의 작은 숨통이 트였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것을 웬만하면 살려 나가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하면 죽을 것 같고, 비핵화를 안 해도 죽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역설적으로요—혹시 비핵화 안 하고 동결 정도로,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핵 을 손에 들고 평화를 지키겠다, 도와 달라 이렇 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긴장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합니다. 국민의 생존이라든가 국가의 보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언주 의원 최근에 '안보와 경제가 별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말로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 안보가 중요하고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야 되는데, 뭐가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안에 따라서 미국도 별개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언주 의원 미국이 별개로 대처를 하면 별개 가 아니니까 대한민국하고의 경제동맹이 안보동 맹 못지않기 때문에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 문에.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의원님의 충언을 충분 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이번 철강 관세의 경우는 미국 측 스스로가 안보를 이유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언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O이언주 의원 어쩌면 김영철의 이번 방남, 굴 욕적이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 로 북핵으로 인해서 전력 균형이 무너진 우리 현 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핵을 손에 들고 평화를 얘기하는 북한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필요하고,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를 절대 허투루 처리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김영철의 방남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란을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면서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피해 가려고 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쉽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 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법사위원회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 몇 시 까지…… 법사위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안질의를 아까 중단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의장 정세균**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 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조만간 곧 법사위가 개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안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 평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우려까지 제기됐던 상황,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참가를 꺼렸던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남북대화의 창이 열리면 서 평화 올림픽으로 대성공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기까지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민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평창 올림픽 의 성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성원하고 힘을 모았는데 오로지 한 정당만 올림 픽을 방해하고 남북 화해를 방해해 왔습니다.

외교 ·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 을 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주장하던 정당이 이번 에 보여 준 모습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가 없고 애국가가 없다' 또 는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흔든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급기야는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부르면서 올림픽을 폄훼하고 국민 들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20여 년간 평창 올림픽을 준비했던 강원도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 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대해서 한국당의 반응은 내로남불 을 넘어서 맹목적인 반대로 남북대화 자체를 가 로막으려고 하는 정말 광기 어린 극우집단의 모 습이었습니다.

국가적인 대사인 전 세계의 축제 올림픽과 남 북 화해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부에 대 한 비판이나 견제를 넘어선 반국가적인 행위이며 여기에 대해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소 30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던 평창 올림 픽, 예상과 달리 흑자가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 던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 다. 최종적인 수지는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난 뒤 에 공식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의 추계로는 흑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김경협 의원 최소 30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 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500억에서 1500 억까지 흑자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전쟁 위기까지 거론이 되면서 안 전 문제로 외국 선수단들이 참여를 망설였던 상 황이었는데 이번에 몇 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습 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에 구십몇 개국이지요?
- **○김경협 의원** 92개국?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김경협 의원 이게 역대 동계올림픽의 최대 규 모입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습니다. 선수단이 2920 명 정도 왔고요. 기자단이 1만 4000명이 왔습니 다.
- ○김경협 의원 적자가 예상됐던 평창 올림픽이 흑자를 내고 각국 선수단이 참가를 주저했던 올 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것, 그래서 평 창 올림픽의 대성공을 이룬 이것이 바로 평화의 가치, 평화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만약에 군사적 긴장이 작년 말처럼 계속됐더라면 평창 올림픽은 어떤 상태가 됐을까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김경협 의원 평창 올림픽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패럴림픽 그리고 산적해 있는 남북관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간 외교나 남북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을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남북대화가 맞선 보는 자리는 아 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래서 전쟁 중에도 불구대천의 원수일지언정 회담을 위해서는 적장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에 한나라당의 논평입니다.

14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인천 아시 안게임 기간 남북 군사당국 회담 때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지요. 당시에 한국당은 '남북 간 대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바람직하다' 환영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의원 이번에 김영철이 방남을 하면서 군사시설을 시찰했다, 아까 앞에 의원님 질의에 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사시설을 시찰했습 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렇게 되면 14년도 판문점, 우리 측에서 했던…… 판문점도 군사구역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판문점도 그렇고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남측으로 넘어오 면서 지났던 그 도로는 2002년도부터 관광도로로 까지 개방이 되면서 비군사화가 이루어진 지역으 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통일부장관, 말 똑바로 해!」하는 의원 있음) (「거, 좀 들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 그다음에 다른 화면을 보겠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연평도 포격의 주역인 황 병서와 밝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환담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이 북한과 같은 정권, 정치 체제에서 최고통치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래서 그때도, 2014년에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천안함의 주범, 배후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사실 서열로 보면 이번에 방남했 던 김영철은 서열 몇 위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요, 그런 것이 북측이 최근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북한 군부는 지금 벗어나서 통전부장을 맡고 있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2014년 당시에 내려왔던 황병서·최룡해는 북한 정권의 서열 2위·3위였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는 김영철 은 10위권 내외 정도로 인식을 하고 것 같은데 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런……

○김경협 의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2·3위하고는 회담을 하는 것은 괜찮고 한 10위권 내외정도 있는 여기하고는 회담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논리,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영철의 방남 목적이 자유한국당은 '남남갈등 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 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번 방남 목적은 북측 나 름대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 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를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우리 남측과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 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 주장 대로 김영철의 방남 목적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었다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일등공신은 자 유한국당 아닙니까?

(장내 소란)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 회복을 위 해서 책임 있는 자와 얘기해야 됩니다. 고위직 실세는 대부분 제재 대상인데, 제재 대상을 제외 하라고 하면 허세랑 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전쟁 중에도 불구대천의 원수인 적장하 고도 평화회담을 위해서는 회담을 하는 것입니 다.

북 · 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북ㆍ미 간에 불신이 그동안 에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 인 접근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안 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북·미가 지금 최근 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로 진 입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 다.

다행히 남북대화가 현재 재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그러한 접점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할 생각 이 별로…… 굉장히 소극적인, 부정적인 이런 모 습인 것 같은데요.

대화를 할 의지는 있는데, 그 조건부터 놓고 보니까 대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북ㆍ미 간에 쌓여진 불 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먼저 북한이 핵ㆍ

ICBM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조정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이 북핵 동결을 선언 하고 그리고 한미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책을 논의하고, 세 번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는 평화 체제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 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 련해 주는 방식의 3단계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 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 핵 문제를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접근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북한과 미국 간에 좀 대화가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 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 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희로서는 가급적 빠 른 시간 내에 북ㆍ미 대화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 습니다.

2003년 야당 시절 홍준표 의원은 '야당은 경제 잘되게 하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경제가 나 빠야 여당 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된다'라고 말 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창 올림픽에 훼방을 놓고 남북 간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단 리스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서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한국 경제의 몰락이라 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먹고살기가 어려워져야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정당, 이런 정당에게 엄중하 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선동해서 대립 과 갈등 부추기고 이념 장사, 안보 장사로 올림 픽 방해하고, 남북대화 방해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목적이라는 말입니 까?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이라는 말입니까?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보 장사로 먹고 사는 정당,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국론을 분열시 켜서 정치적 이익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기겠다고 하는 정당, 온갖 이면합의로 국민을 속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으로 피해자 할머님 께,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정당, 박근 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이것을 지원해 왔던 정당, 더 이상 국정 방해하지 말고 자중하 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

자, 의원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현안질 문이 진지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남병 출신 이은재입니다.

비핵화라는 선물 보따리도 없이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자 31개국의 제재 대상인 김영철이 평화를 가장하여 축하사절단으로 올림픽을 참관한 것은 남남갈등을 촉발하고 대북제재의 균열을 낸 것입 니다.

이번 방문은 깜깜이 방문이고 비핵화라는 단어는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인의축제라는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막은 내려졌지만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북한에게, 김영철에게 천안함폭침의 면죄부를 준 것은 군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대북제재망을 허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키우는 전술 속임수에 넘어간 이 정권의 올림픽쇼에 대해 따져야 하는 본 의원의 심경은 매우착잡하기만 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연 김영철이 누구인지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 안 나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총리. 잠깐 나와 주세요.

그다음에 영상 좀 꺼 주시고요.

천안함에 대해서 저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매우 참혹하고 분노가 치밉 니다.

#### ○李恩宰 의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규탄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문구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李恩宰 의원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북한 소행이 명백하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 을 부정하고 북한의 도발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 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한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기억이 애매합니다만 제가 금방이라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恩宰 의원**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그 렇게 하셨습니다.

-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 했다면……
- ○**李恩宰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선 그렇다 그러면 이 천안함 도발은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 군합동조사단의 결론은 북한의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恩宰 의원 그 어뢰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민군합동조사단에서 그렇게 밝혀졌습 니다, 특히 그리고 정찰총국의 행동이다. 그 정찰 총국의 책임자가 누구냐? 김영철로 되어 있었습 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의원**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수정안을 내셨어요, 총리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번에……

-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 ○李恩宰 의원 예, 말씀하셔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 당의 어떤 움직임이 있 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 습니다.

○李恩宰 의원 그러시면 지금 이제 총리께서 개 인적인 소견으로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그다음 에 정찰총국, 거기에 책임자 김영철 이것은 동의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 한 것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의원 예, 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에 그 어뢰가 정찰총국의 소관이었고 그때 정찰 총국의 책임자가 김영철 씨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李恩宰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의 무력 도발 책임자도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바뀔 수가 없지요.

○李恩宰 의원 없지요? 그런데……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천안함 폭침으로 부터 더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2014년 남북군사 당국자회담 때는 김영철 씨가 북한의 수석대표로 온 것을 수용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천안함으로 부터 그때가 더 가까운 시기였지요.

○李恩宰 의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들으셨 잖아요.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이 '정 찰총국 김영철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 라 이명박 정부……

○李恩宰 의원 아니, 아까 제가 영상에도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 지요.

○李恩宰 의원 아무튼 뭐 정확한 답변을 안 하 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철을 이번에 데리 고 온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데리고 오다니요.

○李恩宰 의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명박……

○李恩宰 의원 그러면 어떠하든 간에 남북대화 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군사회담 대표로 김 영철이 판문점을 온 것과 지금 우리 정부나 민주 당이 계속해서 판문점에 자유한국당도 와서 협의 를 했는데 왜 그때는 문제를 안 삼고 지금만 문 제를 삼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평창 올림픽 폐막식의 축하사절로 참관 하는 성격이 똑같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군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위 중할까요, 군사회담과 올림픽 폐막식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다르시다면 아시안게임 때 김영철 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왜 환영을 하고 대화를 했는가요?

○李恩宰 의원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판문 점에서 회의 하는 것은 강제로 왔으니까 저희 의 도하고 관계없지만 이번에는 김영철이 온다는 소 식을 듣고서 대환영을 하면서 모셔 온 것 아닙니 까, 어떻든 간에?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李恩宰 의원 귀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李恩宰 의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 차별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구별을 하셔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저는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 영철 단장 등 일행의 수용은 미국 측과 협의했습 니다.

○李恩宰 의원 그다음, 천안함 폭침 규탄을 반 대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혈세로 대남 도발의 원흉 김영철을 국빈 대접하는 난리 법석을 떨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장, 국정원장 등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몰려가서 상전 모시듯이 김영철을 알현한 것에 대해서 국 민들의 비판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저 도 압니다만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李恩宰 의원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들끓고, 그다음에 그 스위 트룸이 하루 저녁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 스위트룸을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그 살 인범에게?

○국무총리 이낙연 남과 북은 이중적인 관계에 있지요, 아까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요. 북 한은 우리에게 반국가단체지만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도 사실이지요. 그 이중적 성격을 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비용은 모두 우리 땅에 떨어진 돈입니다. 북한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요.

(「편익을 지금 북침 주범이 누리는데 뭐가 우리 땅에 떨어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부 대표가 상대 지역을 방문하면 안전이라든가 예우라든가를 하는 관행 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李恩宰 의원 그다음,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결국 핵심은 미국의 정책이 '코피 정책', 나아가서는 '코마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비핵화이지요. 그렇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李恩宰 의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 까?
- ○국무총리 이낙연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북측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나 그런 접점, 이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李恩宰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군인 출신 맞습니까?

-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군인이었습니다.
- ○李恩宰 의원 군인이요?
-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 ○**李恩宰 의원** 군인 맞으셨습니까? 그랬는데 그 런 답변을 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송영무** 무슨 답변인데요?
- ○李恩宰 의원 아까 국방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등등,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국 방부장관이 우리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 니까? 누구를 위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 니까, 뭐 때문에? 주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저희 국가와 저희 국민을 공격하거나 적대행위하는 것 을 전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의원 자, 그러면 보세요.

(「국방부장관이, 주적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 니까!」 하는 의원 있음)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이 장관의 해군 후배 맞지요? 해군 후배 맞습니까?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송영무 해군……
- ○李恩宰 의원 그런데 천안함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누구보다도 각별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답변하셨습니까, 천안함? 정찰총국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정찰총국의 행위가아니면 북한의 행위는 맞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정찰총국의 행위가 아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李恩宰 의원** 답변을 어물어물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함, 누구의 행위입니까?

-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의 행위입니다.
- ○**李恩宰 의원** 북한 어디입니까? 책임자가 누구 입니까?
-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책임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李恩宰 의원 왜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송영무 최고의 의사결정자라고 제 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 ○**李恩宰 의원** 그러시면 우선 국방부에서 정훈 교육 자료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 있지요?
-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 ○李恩宰 의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를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재에?
-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일보와 그 교재에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요
- ○**李恩宰 의원** 거기는 김영철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 김영철을 지목했던 국 방부의 고위자들, 국방부장관들 이 사람들 다 틀 린 거네요.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날때의 장관들 증언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李恩宰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분 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김영철의 소행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本恩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여쭤보겠어요. 지금 김영철에 대해서 31개국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철에 대해서 왜 31개국에 서 제재 조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의 경제 문제라든지 유엔 제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천안함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 다

○李恩宰 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관님! 그 사람이 경제의 무슨 마인드 어쩌고저 쩌고 그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을 폭침했기 때문에 31개국에서 제재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군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도대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연평해전 때 완승을 했고요, 저희 장병들한테 정확하게 대적관 교육 을 시키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恩宰 의원 전혀 믿을 수 없고 지금 이와 같 은 장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58만 군인이 어떻 게 교육을 받으려는지, 우선 장관부터 교육을 다 시 받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대적관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李恩宰 의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 정도 대답을 못 하면서 무슨 국방부장 관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60만 국군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하는 의 원 있음)

○李恩宰 의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핵 있는 가짜 평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특히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이십여 년 간 대화, 합의, 도발, 대화라는 반복된 협상 전략 을 고수하며 핵무기를 완성시킨 북한 행태에 아 무 말 못 하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지요? 지금 민주당과 또 우 리 정부에서 나오신 장관, 총리께서는 김영철을 대변하기 급급합니다. 북한의 대변자들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북한의 대변자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정부가 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 북한이 대화의 틀로 나오도록 해야 하고 북한도 핵 있는 평화라는 허튼 꿈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쇼에 놀아난 정권, 번번 이 당하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핵 있 는 가짜 평화, 햇볕의 미몽에서 빨리 벗어나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저기 아까 합의한 게 열 명 중에 다섯 명 하고 법사위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정회하기로 했 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법사위에서 지금 처 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오지 그게 중간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그러면 정회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의장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들 이 합의한 건데……)

자, 의원 여러분, 지금 법사위가 개의돼서 12건 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 니, 그래도 법사위도 대한민국 국회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런데 아까 합의가……)

가세요. 가서 기다리세요.

알았으니까 가서 기다리시라고.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님 이 거는 합의는 합의대로 지켜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라고.

('그만해요,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까 합의가 법 사위에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오면 그러면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다 섯 분 하고서 정회한다고 했고요.)

('그만해요,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기다리세요. 됐어요.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오늘 선거법도 처리를 해야 되고 12건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홍근 의원 단하에서 ─ 어차피 야당 요 구에 의해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이기 때문 에 오늘 아마 작심하고 늦게까지 계실 거예 요. 그러니까 아까 약속대로 박지원 대표님 까지 하시고 정회를 해 주시지요.)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박지원 대표님 까지만 하고 그러고 정회해 주십시오.)

(○박홍근 의원 단하에서 — 그렇게 알고 있 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기다리시라고.

○박지원 의원 우원식 대표, 요것이라니? (웃음소리)

들어가.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그래도 여당 원 내대표한테 '들어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것이라고 했잖아.

(○우원식 의원 단하에서 — 그래도 여당 원 내대표한테 '들어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 당 대표다.

(웃음소리)

의장님 시작해도 됩니까?

- ○**의장 정세균** 예, 시작하십시오.
- ○**박지원 의원** 전남 목포 출신 민주평화당 박지 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대통령은 DJ·노무현·문재인, 기회를 위기로 망친 대통령은 MB·박근혜입니다.

(「핵 개발은 누가 했어?」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한미 관계 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 요청 회견을 했습니다. 김여정, 김영남도 오 고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김영철, 최희도 왔습니다. 500여 명의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이 왔습니다. 미국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

####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지원 의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과 우리 한국 간에 사전 양해와 합의가 많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늘 상황 변화마다 사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미국 측에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한미 동맹, 한미 신뢰, 한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 주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인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방카보좌관을 뵈었을 때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 앞에서도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대화가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진 것,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리에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짐작하시는 그런 배려,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의원 통일부장관.

김영철 대표단장 일행이 워커힐에서 우리 정부고위 인사들과 다섯 끼 식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영철과 북핵과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과 또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 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미 저희가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만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반 드시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 제의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북측에다 가 분명하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 다.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

김영철의 북ㆍ미 대화 용의 발언은 어떠한 맥 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 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서도 북ㆍ미 관계의 어떤 대화, 또 관계에 진전 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쪽의 그런 강조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서 다시 물은 거예요.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사이에 무슨 얘 기를 나누었는지 우리 국민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밝힐 용의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과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진입될 수 있 도록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의원** 아직은 소상히 밝히기는 이르다. 이런 내용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되면 분명하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외교차관, 제 경험에 의거하면 이러한 대화 내용을 미국 정부에서 소상히 설명 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간, 우리 정부 와 북한 대표 간에 나눈 대화를 미국에 어느 정 도 설명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 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 하였을 때 우리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 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됐습니다. 총리께 부탁드리겠습 니다.

저는요 최근 대북특사 파견,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먼저 대미특사,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 을 추진해야 성사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을 때 첫 반응이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이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뜻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영남·김여 정 · 김영철과 나눈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 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에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 령의 귀에 직접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 리께서 대미특사 파견은 어떤 분이 가야 되며, 대통령께 한미 정상회담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 할 용의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께 박 의원님 말씀을 꼭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사로서 어떤 분이 적절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선 대미특 사·한미 정상회담, 후 대북특사·남북 정상회담 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2000년 김대 중 대통령님에 의한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은 미 국의 동의가 선행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저는 대미특사로 트럼프 대통령 을 만날 수 있는 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미특사를 보낸다고 하면 미국도 잘 알지만, 특히 북한의 셈법을 소상히 알 수 있 는 사람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원님의 뜻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다음 재선을 위해서는 사업가적 손익 개념 으로 접근하는 그 성격으로 봐서 오히려 클린 턴 · 오바마 정부보다도 북한 핵 문제를 그런 기 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 단히 실용적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그런 감각 과 전략을 가지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박지원 의원 3월 18일까지, 즉 평창 패럴림픽, 이때가 평화기간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중요합니 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 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에게 이른바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북한이 열병식을 축소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지원 의원 행동 대 행동으로 한미 양국도 성의를 보여 줄 때가 됐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에게 어떤 길을 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의 핵 무장화와 한미 군 사훈련을 등가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일시 연기돼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볼 때 역대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진보 정권보다도 훨씬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북한 측 인사들은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교과서처럼 얘기하면 서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 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박근혜는 야당 의원으로 평양 방문한 것 아시 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장,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와 협의)

- ○박지원 의원 MB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 **○의장 정세균** 조용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국회가 하도 엄중해 가지고……

○**박지원 의원** 의장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국회가 엉망입니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선 핵 폐기 의 조건의 빗장을 풀어 버렸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지원 의원** 총리는 이러한 보수 정권의 훌륭한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포함하는 6·23선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었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참 빛나는 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신이 되어 있는 정당들이 그런 정신을 좀 일깨우시길…… '일깨우신다'는 표현 취소합니다. 그걸 상기하시고요. 우리도 그러한 과거의 축적이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한국당·바미당 그분들이 집권할때 김영철과 회담을 했습니다. 3년 전 인천 아시 안게임에서는 이분들이 인공기 옆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북한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황병서, 대남 강경파 최룡해, 김양건 이런 분들하고 악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김영철과 군사회담도 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지원 의원 왜 그때는 공항에 드러눕지 않고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드러눕습니까? 왜 그때는 김영철을 체포·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옳 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야당은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전쟁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가 성공할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우리모두가 주역이 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 틀린 것 있어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 ○**박지원 의원** 동의하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박지원 의원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질문 할게요.

군산과 전북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조선 군산, GM 군산…… 왜 하필 군산과 전북만 다 공장을 폐쇄합니까?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군산만 그

런 게 아니라 울산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십니까? 이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마다 군산을 직접 가서 협력업체나 노 조 그리고 경제지도자들 모두 뵈었습니다마는 저 희들의 지혜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 다.

○박지원 의원 군산 GM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경제부총리와 모 의원이 만났습니다. 요즘 그 렇지도 않아요. 조선 수주가 들어오니까 현대조 선 군산을 살리는 대신에 GM 군산을 폐쇄하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 니다.

- ○박지원 의원 그럴 리 없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지원 의원** 전북 군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평화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남 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만이 가능하고 먼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미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만 대북특사도 갈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지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석부대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지연되었던 안건들이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에 당도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사정족수는 되는데 의 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 는 형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결정족수 를 채워 주셔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 석부대표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 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 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를 적대하는 행위는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김도읍 의원 주적이 어딥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게 주적이라든지 종적이 라는 것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런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 니다.

(「대답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이 답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김도읍 의원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적으로 주적은 대한민 국을 적대행위 하는 나라는 모두 적입니다. 어느 군사적 교리라든가 이런 데서 주적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고 적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국방부장관이 왜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이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 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 잘 하고 계시는구먼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60만 군인이 국방부장관의 언행을 다 보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도읍 의원 장관님, 주적에 대해서 말씀 주 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주적에 대한 개념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정의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 도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주적이라는 용어가 없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정의하기는 장관으로 서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도읍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고 침략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국방부장관 송영무 6·25 전쟁이라든가 그 후 에 도발하는 곳은 북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과 대포가 어디를 향

하는지 물어봐」하는 의원 있음)

○**김도읍 의원** 그래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 니까, 군사적으로?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적으로 꼭 주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김도읍 의원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입니다.

○**김도읍 의원** 1953년 정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 나라를 도발하거나 침략한 횟수가 몇 번쯤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를 일부러 헤아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읍 의원 일부러 헤아리지 않았다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 니까 제가 몇 회를 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횟 수이고 간첩 수라든가 등등을 다 포함하면 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대략 몇 번 이상 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개략 한 200회 이상 되지 않을까, 이것은 추측입니다. 데이터를 제가 얘기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도읍 의원** 장관님 들어가셔서 국방부 관계 자로부터 통계를 좀 확인해서 다시 나오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이제 국방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강원도민, 특히 평창군민들 너무 수고하셨고 존 경합니다.

평가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평창 올림픽의 성 공이라는 그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우를 범 하지 마시고 패럴림픽까지 잘 끝내 주시기 바랍 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 외국 유명 언론에서 우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국내에 요약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지요.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다 또는 사상 최고로 잘 조직된 동계올림픽이었다, 최대 규모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다 음에 입장권 판매 등으로 추산되는 흥행 이런 것 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의원 입장권 판매가 흥행이 됐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미 140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됐고요, 판매율도 100%를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경향 각지 지자체에서 동원돼 가지고 그 추운데, 무박 2일로 동원돼 가지고 관람객 채운 것 그것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은 유화 정책을 펴는 한국 정부와 잘 속는 서방 언론 덕분에 감옥국가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르몽드지에서는 '김정은이 올림픽을 퇴색시키고 세계 미디어 외교무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올림픽처럼 보인다'. CNN에서는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감이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 도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오죽하면 미국 평창 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에서 개막 방송하면서 자막에 '평창 (북한)' 이렇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그 방송의 실수지요. ○김도읍 의원 그만큼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 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김도읍 의원 자, 올림픽은 왜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런 답변을 원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쿠베르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 를 통한 인간의 완성 그리고 국제 평화의 증진'.

○**김도읍 의원** 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국무총리 로서 올림픽 헌장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말 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헌장까지는 제가 암기하지 못합니다만 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올림픽 정신은 제가 암기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수 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의 방남과 아울러서 올림픽을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저희들이 명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림픽 헌

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올 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 를 제고시키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를 고취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이 원래 목표로 삼았 던 게 평화 올림픽, 경제 올림픽, ICT 올림픽, 문 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 그리고 치유의 올림픽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김도읍 의원 그 말씀 외우신다고 참 애쓰십니 다.

○국무총리 이낙연 일부러 외운 것은 아니고요. ○**김도읍 의원** 어떻게 장소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올림픽 헌장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인간 존 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인권적 국가가 어디 입니까? 국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요. 단체가 어 디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도 인권에 매우 반대되 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의원** 인간 존엄성 수호하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가장 악랄한 독 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외국 언론에 금 메달감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북한의 반인권성을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표단 단장이라든가 그 기회를 통한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고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총리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만 보 시는데, 알리바바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도읍 의원** 그 회장이 누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마윈 씨지요.

○김도읍 의원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방한했습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서울에 오셨더랬습니다. ○김도읍 의원 알리바바는 홍보관을 개관했습니 까? 홍보관, 알리바바가.

○국무총리 이낙연 예, 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 다.

○김도읍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도읍 의원 홍보관을 개관했는지 묻지 않습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외국 기업의 홍보관까 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 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아니, 몇 개 했느냐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숫자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 다.

○**김도읍 의원** 아니, 온통 김여정, 현송월, 김영 철 여기에만 관심 있고……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우리 기업 들이 홍보관을 개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 게 발돋움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 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북한에만 신경 써서 그 런 것은 아니고요. 세계에서 선수가 몇 개국에서 몇 명 왔는가 그것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업 몇 개 가 홍보관을 개관했느냐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 경제부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도읍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경제부총리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라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도읍 의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가 약 간 다른 것이지요, 경제 파트하고.

○**김도읍 의원**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하는 분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경제 분야에 관해서 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 다. 제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걸 잘했다 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 린 겁니다.

○김도읍 의원 총리 보십시오.

이 기업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 전에 관광 객들·기자단 많이 왔다고 자랑하시던데 그분들 이 우리 기업들 홍보관을 둘러보게끔 정부가 도 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총리께서 모

르느냐? 언론의 관심을 못 받았어요, 기업 홍보관이.

-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 ○김도읍 의원 우리 국내 기업들이……
- ○국무총리 이낙연 언론의 관심까지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도읍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가 지원을 하다 보면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도읍 의원** 그런데 우리 기업이 홍보관을 몇 개를 개관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우리 평창 올림픽 현장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 원장을 초대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리바바를 홍 보했어요. 알고 계세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얘기는 들었고요.
- ○**김도읍 의원** 그 얘기는 듣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기왕에 저한테 꾸지람을 주셨으니까 답변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 ○**김도읍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안보 는 별개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한미관계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 할 때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요.
- ○김도읍 의원 한미관계에 한정해서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김도읍 의원** 말씀해 보세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니까 어떤 사안에는 안보와 경제가치가, 그것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서……
- ○국무총리 이낙연 예를 들면 이번 철강관세의 경우에는 미국 측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한국이 동맹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무역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제는 경제대로 대 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의원 사안별로 다르다는데 그 두 가지

입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더 있겠지만 한없 이……
- ○김도읍 의원 말씀을 해 주세요.
-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아니, 방금 그런 얘기 입니다.
- ○**김도읍 의원** 총리께서 늘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 ○국무총리 이낙연 두루뭉수리가 아니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김도읍 의원**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안별로 이야기해 주세요.

세탁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국무총리 이낙연 세이프가드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와 있지요. 철강관세는 아직 미국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USTR을 비롯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는 아마도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도읍 의원** 아니, 세이프가드에서 세탁기…… ○국무총리 이낙연 세이프가드는 이미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지요.
- ○김도읍 의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
-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다, 보도되고 있는 그 대로지요.
- ○김도읍 의원 보도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 ○**김도읍 의원** 아니, 답변을 주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못 넘어갑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김도읍 의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 처할 겁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도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도읍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상세한 것은 경제부처에 서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도읍 의원** 여태까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의껏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두루뭉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도읍 의원 경제와 안보가 동맹을 따로 한

다,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스 스로가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 의원** 보십시오.

작년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 결해 주면 미국은 통상 환율조작 문제를 잠시 미 뤄 두겠다고 했으나 1년 후에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자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 카드 를 꺼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 니다.

○김도읍 의원 파악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의원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도읍 의원 이것 아세요?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넣을 때 미국 무역대표부가 반대했다 는 것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 다.

○김도읍 의원 그런데 트럼프가 넣으라고 했다 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도읍 의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경제 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북한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 제 분야는 비교적 경제부총리께 맡겨 드리고 있 습니다.

○김도읍 의원 김여정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몇 번 만났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올림픽 개막식장에서 뒤돌아 서 악수한 것까지 합치면 네 번쯤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김도읍 의원 네 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면 미 국 부통령 펜스는 몇 번 만났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식사를, 만찬을 하셨지요.

○김도읍 의원 몇 번 만났냐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올림픽 개막식 포함하면 두 번이던가요.

○김도읍 의원 저 같으면 이렇게 통상 압박이

있고 한데 펜스 부통령 여러 번 만났겠습니다. 다른 일정 다 제치고도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문 제가 걸려 있는 통상 문제를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어 보기 위해서라도 펜스를 여러 수십 번이라 도 만났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알기로는 펜스 부통령 의 일정 자체가 서울이나 평창 체류가 매우 제한 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도읍 의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펜스 부 통령하고 아소 다로 부총리하고 경제회담이라는 핫라인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갖은 통상 규제에도 다 피해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것을 보도를 통해 서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의원 지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도읍 의원 올림픽 개막 이후 펜스가 다녀가 고 나서 백악관하고 청와대 통화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안보보좌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도읍 의원 연결되고 있나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김도읍 의원 김영철이 안 되는 이유, 이 정부 만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그렇다고 하고 있지요,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김영철이 오겠다고 할 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과 사전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영철 단장 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 무도 없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최종보고서는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그리고 그 것이 정찰총국에 속해 있는 어뢰에 의한 것이었

다' 거기까지는 돼 있지요. 그리고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렇게 돼 있지 김영철을 딱 지목해서 '이 사람이 지시 했다' 여기까지는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얘기 정도이지 그런다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상당수 국민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김도읍 의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관계있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관하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잠깐만요, 당시의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 금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 하는 의원 있음)

바로 그런 인식을 그 당시에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군사회담을 했겠습 니까. 그 사람하고?

○**김도읍 의원** 마침 민주당 의원이 저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판문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판문점의 역사.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자로서는 판문점을 가장 긴기간 동안 출입한 기자입니다만 역사까지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김도읍 의원** 51년부터 그곳에서 휴전협정이 시작됐고 지금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있는 곳이지 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저도 압니다.

○김도읍 의원 2014년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북한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남의 잔치에 재 뿌리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각성을 하셔야지요. 김영철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철의 현재 직함이 뭐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통일전선부장입니다.
- ○**김도읍 의원** 북한 통일전선부가 하는 일이 뭡 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 ○김도읍 의원 예? 저는 말 안 했는데요.
- ○국무총리 이낙연 대남공작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김도읍 의원 예?
- ○국무총리 이낙연 대남공작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 ○**김도읍 의원** 범민련하고 범청학련이 이적단체 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법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도읍 의원 어떤 판단입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 겠습니다.
- ○**김도읍 의원** 범민련·범청학련은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이 런 걸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이적단체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지요?

.....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김도읍 의원** 우리나라에 있는 범민련·범청학 런 이 이적단체가 김영철이 부장으로 있는 통전 부의 외곽 조직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 ○**김도읍 의원** 통전부, 조평통, 범민련, 범청학 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 끝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과 올림픽 현장에서 활개를 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후락 정보부장을 평양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 **○김도읍 의원** 총리님!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김도읍 의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으로 부터 안전하고 자유롭습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 ○**김도읍 의원** 그러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 적은 북한의 핵 폐기입니다.
-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합니다.
- ○김도읍 의원 맞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합니다.

- ○김도읍 의원 그렇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제 마무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김도읍 의원** 북·미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도 핵 폐기입니다.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김도읍 의원 이번에 천안함 유족의 그런 반 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아무 답 없이 김영철을 불러서 핵 폐기 약속받았습니까?

(「부의장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이낙연 불렀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보내 달라 이렇게 불렀겠습니 까? 그런 일 없습니다.

- ○**김도읍 의원** 그러면 못 오게 했어야지요. 얻 은 게 뭡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비핵화의 중요성, 북·미 대 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득·설명했습니다.
- ○김도읍 의원 그래서 비핵화 약속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단계까지 가는 데에는 많 은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
- ○부의장 심재철 정리해 주시지요.

은 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김도읍 의원 밤새 이야기를 해도 다 못 할 이 야기지만 시간적 한계상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아까 그것은 다음 기회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 민과 국가를 침략한 횟수가 1000번이 넘습니다.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의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정부, 개탄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심재철**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좀 나와 주세요.

장관님, 법치주의가 뭡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 ○**홍익표 의원** 서구 근대사에서 법치주의의 의 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 ○홍익표 의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근대 유럽 역사에서 민주주의 역사에 보면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 즉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기관이 법에 의해 서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 해서 더 엄정하게 처벌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 습니까?
-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습니다.
- ○**홍익표 의원** 제2롯데월드 최근 보도 보셨습니 까?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봤습니다.
- ○홍익표 의원 이것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찰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익표 의원** 제가 PPT 한번 띄워 드릴 텐 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른 누구 자료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청 와대 자료인데요. 이걸 단계별로, 1단계 · 2단계 · 3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청와대가 만들었습니다.

1단계에서 롯데하고 협의해서 원래 1조가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을 1000억 원대로 줄여 주는 겁니 다, 비용을. 그리고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발언까 지 인용하면서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 고. 그 당시 엔화가 한 1500원까지 올라가니까 엔화로 하면 싸니까 지금 하니까 너네 유리하니 까 엔화로 해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 법인이 분리돼 있지요?

PPT 내려 주세요.

그런데 엔화로 그걸 한다? 그것 좀 이해가 되 지 않는데 이것은 외환관리법 위반 소지나 이 엔 화로 하는 비용이 어디인지 이것 한번 수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쎄,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 다.
- ○**홍익표 의원** 이것은 일본하고 국제 금융공조 를 해서 외환관리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롯데 법인의 돈 이면 엔화로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한국 법인이

면.

그런데 일본 법인의 돈이 들어오면, 분명히 두 개 법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법인이 만 약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일본의 법에서 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 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점을 포함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니까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 결정 시 특혜를 보는 측면을 강조하라, 제가 보기에 이거는 롯데가 로비를 했다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케팅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2단계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정당성 확보 방안', 아예 롯데를 위해서 진짜 온 뭐를 다 벗고 나섭니다. 이게이미 기존 정부도 다 검토했던 내용인데 기존 정부에서 했던 내용이고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안보와 경제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를 합니다. 여기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자' 이런 얘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데요.

다음 3단계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 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경제적 편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자'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보상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 버립니다. 즉 국가 안보를 경제와 뒤바꿔 버린 가짜 보수, 거짓 보수입니다.

맨날 입으로는 안보 얘기 하면서 실제로 안보 를 자기의 주머니, 이권 사업에 거침없이 내걸 수 있는 이게 안보 세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자료의 어떤 진실성부 터 시작해서요.

○**홍익표 의원** 아니, 이것 국가기록원 청와대 자료들이라니까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홍익표 의원** 이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국가기록원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자료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홍익표 의원** 이것 적극적으로 수사하셔야 됩 니다.

이것 보면 자기들의 속셈이 다 드러나요. 2008 년 말쯤 되니까 제2의 대운하 사업으로 이끌었다 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4대강 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이 문건에 그렇게 나와요, 3단계.

그리고 과거 정부 주요 인사들을 동원해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야권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언론 공작 그다음에 정부 부처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야권에까지 공작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롯데가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 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롯데 측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아주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현안질의해요, 현안질의」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혐의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에 끼친 손실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자원외교 40조, 4대강 사업 20조 그리고 소위 국방 비리와 관련 돼서 거의 40여조 추산해서 100조 원 추산합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많이 국가에 손실을 끼친 대통령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서초동 앞에 드러눕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홍익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남북대화 하시느라고. 장관께서 통일부에는 언제 들어가셨지요?

- ○**통일부장관 조명균** 처음 통일부 시작한 것 말씀이십니까?
- ○홍익표 의원 예.
- ○통일부장관 조명균 84년입니다.
- ○홈익표 의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네요?
-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 ○**홍익표 의원** 88올림픽 당시 일을 한번 회고를 해 보시지요. 88올림픽을 통해서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과 그 전후에서 그다음에 소위

북방외교에 입각하는 과정에서의 그때 올림픽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 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때 당시 88올림픽에 소 련이나, 당시 소련이겠습니다. 소련, 중국 등이 다 참여를 하면서 88올림픽이 당시의 동서냉전을 빨리 완화시키는 데 그리고 동구권과 이런 변혁 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우리 한반도 측면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한반도 측면에서도 그것이 우리와 소련 그리고 중국 간의 수교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전체의 긴장 을 완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 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사실 올림픽이 그 이전에 매우 정치적으로 활용됐지요? 80년에 구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미국이 참가를 거부했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 보복으로 84년 구소련과 동구 권이 거부하면서 반쪽 올림픽이 됐던 것을 88올 림픽이 통합된 평화의 축제로 만들었지요, 그렇 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자,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한·소 수교, 한중 수교로 이어졌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사실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우 리 국가의 외교력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혁은 당시 노태우 정부 때 그 한중 수교, 한・ 소 수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동의합니다.

○홍익표 의원 그리고 그 동력이 남북기본합의 서 체결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화 해 협력으로 이어져서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 원래 당 초 합의는 의회 비준으로 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런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비 준으로 했는데 왜 남쪽에서는 비준이 안 됐습니 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당시에 우리가 노태우 정

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남북관계가 상당 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 초에는 남북합의서를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장관께서 설명을 좀 피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정부 여당이 대 선을 앞두고 남북대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북기 본합의서 국회 비준을 자기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동의하 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민주평통을 통해 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를 자신 못 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게 상당히 큰 아쉬 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툭 하면 안보, 남 북관계 얘기하는데 정치, 자기의 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서면 일상적으로 대결국면을 조장 하고 화해 협력을 방해하고, 그것의 의지가 없는 게 누구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그 성과조차도 방해했고요. 그러니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 부에서의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깃장 놓 고 통일대교에서 드러눕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이분들한테 익숙하고 한때는 그게 잘 먹혔는데 지금은 잘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애잔하기 도 합니다.

이것밖에 없나 싶어요. 한미통상 문제가 생겨 도 한미동맹, FTA 문제가 생겨도 한미동맹, 뭐 정부가 경제·사회 문제를 해도 좌파 친북정부, 다른 논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장관께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통 일부 했는데 장관보고, 아무리 국회에서 면책특 권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국무위원도 인격이 있고 개인 조명균이라는 분의 인격이 있는데 '북한 대변인이다' 이런 말을 들으 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 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시면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쨌든 저희가 더 잘하라 고 하는 질책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지요.

아까 계속 생각이 인천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데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트위터인데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께서 트위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 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장인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 서 등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 앞으로 체육 교류 를 통해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 내려 주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겁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홍익표 의원** 총리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말씀하세요.
- ○**홍익표 의원** 황병서가 당시 북한의 2인자, 3 인자였지 않습니까, 최룡해하고?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홍익표 의원 실질적으로 북한군 내에서 굉장히 실력자였고 연평도 포격에 책임이 있다 이런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 ○홍익표 의원 그런데 이분하고는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김영철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 와서 당당하게 대화했고 어렵지만 이런사람하고 대화해야 남북 교류가 풀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지요.
- ○홍익표 의원 저는 참 아쉬운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지난 박근혜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 정말 통일대교에 드러누운 것처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울 의지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할 말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할 얘기 하는구먼」하는 의원 있음)

여당으로 할 때 좀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지.

(「아니, 왜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미국 측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 ○국무총리 이낙연 예, 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든가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 ○홍익표 의원 일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은 제가 조금 아는 편입 니다마는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간다든가 또는 북미 대화가 시동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일본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 ○홍익표 의원 하여간 이번에 가장 어깃장 놓은 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둘이 참 비슷해요. 아까 자꾸 우리가 북한 대변한다는데 저기는 아베 총리 대변인 하고 그 하위조직 같다는느낌이 듭니다.
- ○국무총리 이낙연 전통적으로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더 강경한 경우가 많았습니 다.
- ○홍익표 의원 아베 총리야 자기 국익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아베 총리 놀음에 같이 따라하는 것을.

총리 들어가십시오.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은 전쟁을 치를 듯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는 새로운 희망과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 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지만 전시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택하지만 젊은 사람이 나가 싸웁니다. 부자가 전쟁을 선택하지 만 가난한 자들이 싸웁니다. 기득권 세력이 전쟁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평범한 국민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됩니다. 남성들이 전쟁을 선택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막습니까? 자기 아이들, 자기 자식들이 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흘릴 거라면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런 분들의 상당수의 자식들이 미국 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반 도의 전쟁 위협보다 미국의 전쟁 위협을 더 걱정 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거기 살아서 그런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홍 의원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 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 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짧은 거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까 자꾸 작전도로 얘기하는데 군사분계선은 열어 주고 작전도로 쪽-작전도로도 아니지요-거기 갔다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김영철한테 청와대 간 것도 문제 삼아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 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정부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참, 제가 보기에 애절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 ○부의장 심재철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 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출신의 유은혜입 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 직전에 이 자리에서 총리님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아주 잘 치러져서 오늘 이 자리에 정 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섰습니다.

저는 17일 동안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총 리님도 그러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참 오랜만에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유은혜 의원** 모든 선수들과 우리 국민들이 하 나 된 열정으로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정말 자랑 스럽다 이런 자긍심을 높여 주었던 시간이었습니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총 리님과 관계 부처 장관님 또 직원 여러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별히 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총리님께서도 이런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싶을 텐데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가 뭘 했다는 것은 과분 하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됐을 때 그 때만 해도 평창 올림픽은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 하필 거기에다 천장도 없는 스타디움을 지어 가지고 한겨울에 거기에서 개막식을 해야 될까, 날씨는 과연 어떻 게 될 것인가, 티켓은 제대로 팔릴 것인가 등등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좋은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 수, 임원, 군인, 경찰, 소방관, 질병관리본부와 의 료진, IOC, 각국의 정상들, 무려 1만 4000명에 이 르는 세계의 기자들, 2900명의 세계 선수들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애국가를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을 총리공관에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먹었 는데요. 기회 닿는 대로 제가 감사의 표시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은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불안 한 한반도 안보 상황 때문에 유럽의 선수단들은 참가 여부를 고민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번 평 창 올림픽이 92개국 2920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해서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가장 많은 국가와 가 장 많은 선수단이 참여한 대회로 기록이 되었습 니다.

총리께서는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으 로 이렇게 역대 최대의 참가 규모를 이룰 수 있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시 북한의 참가가 긍정적 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유럽의 몇 개 나라, 심지어 미국에서마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선수단을 안 보낼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참가하고 또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간에 대화의 숨통이 조금 트이고 그래서 사상 최대의 동계올림픽 그리고 외신들이 군인이 보이지 않는데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평화로운 올림픽이 된 건 참으로 기적 같은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의원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이런 역대 최대의 참여와 의미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 다.

개막식에 남북 선수들이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입장했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고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 서는 세계 평화와 희망을 안겨 주는 일이라고 극 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모든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으로 평창 올림픽을 바라봤고 또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독 야당에서는 일 방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의미를 폄훼하거나 남북 화해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 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남북대화의 분위기, 교류의 물꼬를 이후에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 정부에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전략과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되살린 대화의 숨통,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든 올림픽·패럴림픽 이후까지도 살려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북·미 간에도 대화가 생기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오고 이런 구조로 꼭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하고 있고요. 북한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가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옳을 것이고요. 북·미간에도 모종의 여건이나 접점이 만들어지도록 암중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69.1%,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특히 북ㆍ미 대화

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적 분위기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 청드리고요. 또 패럴림픽까지도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패럴림픽까지 성공을 해야 평창 올림픽은 완성됩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연달아서 한 장소에서 연 것은 1988년 서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서로 간에 한일체다 하는 것을 한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30년 만에 다시 그런 기회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장애인 스포츠를 키우고 또장애를 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를 세계를 향해서 좀 발신했으면 하는 그런욕심이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맙습니다.

○유은혜 의원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되면 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 제기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막식 이후에 헤어지는 선수단들을 보니까 서로 눈물 흘리면서 또 만나 자는 기약을 하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단일팀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는 우리 선수들을 희생시킬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단일팀 그자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로잔에서 단일팀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참여 전체를 IOC 집행위원회와 또 북측 NOC와 남측 대한체육회나 조직위 그리고 또 주무 부처가 함께 참여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선수들의 입장 또 저희 아이스하키협회나 세라 머리 감독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회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우리 아이스하키협회에서 받

을 수 있다는 세 명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 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끝내 그것을 관철시켰고 요.

또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게임 엔트리를 5명 을 더 주겠다, 스위스와 스웨덴과 일본도 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27명이 출전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공정하지 않다고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북한 선수들을 내려 보내서 팀워크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을 북에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서먹했던 분위기가 세라 머리 감독의 지도력으로 융합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평가전을 비롯한 나머지 경기에서도 잘된 팀워크 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 만 하나되는 감동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어 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 키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간의 이러 한 체육 교류가 얼마나 의미 있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어떤 남북 교 류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먼저 대한체육회 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북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 경평축구라든가 강원도에서 축구를 포함한 여 러 가지 스포츠 교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고요. 태권도 쪽에서도 태권도 교류에 대해 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교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 교류 측면에서 도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 중에 재개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사업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 한겨레라는 인식을 잊지 않게 하기 위 해서 사전을 만드는,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작 업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하자라든가 개성 만 월대에서 발굴사업을 하던 중에 고려 때 금속활 자가 출토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만월대 발굴사 업을 계속 재개하자라든가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화 교류가 재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러지는 않으실 테지만. 지금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 예술 교류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남북 간에 물꼬가 터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유은혜 의원** 저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마 개ㆍ폐 막식을 다른 나라의 외교 고위급 인사들과 같이, 함께 보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셨을 텐데요. 개·폐막식을 본 세계의 정상들, 외신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 우리의 고유 문화, 전통문화와 그다음에 ICT 기술이 결합된 굉장히 수준 높고 품격 높은 공연이었다라는 평 이 많았고요. 드론을 띄워서 오륜을 만드는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호평이 있었고요. 또 남북 여 자 아이스하키 선수 두 명이 120 계단을 올라가 서 마지막으로 김연아 선수에게 최종 점화를 할 수 있게 전달해 주던 그 장면에 대한 감동을 이 야기하는 외국 IOC 위원들의 평가도 들은 바 있 습니다.

저희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서 고구려시대 벽화에 존재하는 인면조라든가 또 청룡ㆍ백호ㆍ 현무·주작을 비롯한 우리 벽화 속에 나오는 상 상의 동물들을 개막식장으로 끌어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태극문양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 태극 문양이 갖고 있는 양과 음의 조화 동과 정, 차가 운 것과 뜨거운 것 극단적인 것들이 서로 융합과 조화를 통해서 그것이 삶의 기본원리가 돼야 한 다는 것들을, 장구춤을 추는 엔딩 장면에서 그것 들을 보여 주고 싶었고요.

또 우리가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고 아리고 쓰 린 역사를 살아온 것을 정선아리랑의 구절을 통 해서 노래로 불러주면서 거기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던 그 메밀, 메밀을 먹고살던 강원도 사람들 이 메밀밭 위를 뗏목으로 이렇게 저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뗏목이 반딧불로 반딧불이 별이 되 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우리 민족의 한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여 주고 싶었는데 그것들을 잘 읽어 내는 사람들이 있고 좋게 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 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에서는 장예모 감독이 이끄는 베 이징 동계올림픽을 인수, 우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인수해 가기 위해 베이징 시장을 비롯한 사 람들이 왔고 장예모 감독이 와서 8분간 공연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굉장히 대비되겠다 하고 생 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것보다도, 폐막식에서도 역시 우리가 탁 월한 기량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서 개·폐막식을 준비한 저희 문체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의원 이번 개·폐막식 행사 공연과 관 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처음에 한 500억 정도를 갖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개막식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제대 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나중 에 한 180억 정도 거기에 더 추가로 투입이 되어 서 개막식 공연과 폐막식 공연을 만들어 냈습니 다

○**유은혜 의원** 아까 말씀하신 장예모 감독의 공 연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8분에 한 80억 들 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 한 공연에 80억 들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한 장면에.

○유은혜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폐막식 전체 를 680억으로 예산을 추정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 으로 계산되지, 계량되지 않는 우리 문화의 힘, 우수한 높은 품격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에게 보 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개막식뿐만 아니 라 올림픽 전체에 들어간 비용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포함해서 인지도, 그리고 또 우리 올림픽을 전체 진행하는 과정을 1만 4000명의 신문・방송 기자들이 와서 보면서 외신 에 알린 우리 민족의 우수성, 전통문화의 우수성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등에 대한 평가들이 좋게 이어지면서 현 대경제연구원에서는 앞으로 10년간 한 53조 9000 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고 있는 평가를 보았습니다.

○**유은혜 의원** 제가 알기로도 외신들이 이번 평 창 올림픽의 개·폐막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기술이 잘 융합되었다, 그 리고 한국이 기술적 역량과 유연한 문화적 힘을 보여 줬다 이렇게 극찬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 았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우리 문화의 저력과 첨단기술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 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런 우리 문화의 힘이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 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으로서의 계획과 포부도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실제로 우리 문화 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K-pop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외국인 들이 직접 생중계로 보는 생동감 있는 공연을 통 해서 이렇게 보여 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 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의 저력을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더 많은 투 자를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의 국제 교 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어떤 새로운 조직과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우수한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총 리님께서도 문화재정 2%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문화예산에 대한 더 큰 투자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은 또 안전한 올림픽 으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안 전사고나 외국인 대상의 범죄도 없이 그렇게 안 전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안전 올림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서 너무나 큰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군이나 경찰, 소방관 등등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 주 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안전한 올림픽이 었다고 외국에서 참여한 선수들과 IOC 관계자들 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군 그 리고 경찰 또 대회 지원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분들이 이 올림픽을 치러 낸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취재를 온 1만 4000명의 기자들이 대 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평창이나 강릉에

오게 되면 베뉴(venue) 근처를 M-16으로 중무장 한 군인들과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로 에워싸 고 있을 것으로 연상하고 왔는데 군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느냐?',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놀랐다. 대한민 국의 치안이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다' 하는 얘 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은혜 의원** 앞서도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 걱정들 많이 말씀 을 했었는데 평창 올림픽의 적자 우려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유은혜 의원 적자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랬는 데 입장권 수입도 1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들었 고요, 그리고 올림픽 기념품도 연일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있고, 82개의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해서 후원 목 표액도 118%나 넘겼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 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이렇게 성 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소비가 1조 4000억이 증가 하고 GDP가 0.2%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 결과인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유은혜 의원** 그리고 이에 더해서 관광이 앞으 로 활성화된다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일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 올림픽의 경제효과가 적자를 우려했던 것 에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패럴 림픽까지를 포함해서 이후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 고 그 이후에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올림픽에서의 흑 자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면서 올림픽 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자체 홍보 같 은 것들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다음에 표가 예상 외로 많이 팔리고 물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생긴 수익금, 그리고 IOC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 습니다. IOC는 뉴스 중계료 등을 통해서 얻은 수 익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은 수익을 내게 되었고요.

한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강제로 이렇게 모금 을 했다든가 하는 차원보다는 정상적인, 다른 나 라에서도 올림픽을 치렀을 때 이루어지는 세 가 지 수익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이 발생됐는데 패럴림픽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경기들이 인기를 끌고 또 컬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고 요. 스키 경기장에서는 입석으로 관람이 가능하 니까 120%씩 판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 이 패럴림픽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는 생각과 함께 또 수익도 중요하지만 패럴림픽 에서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치유와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주는 그런 올림픽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특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그동 안에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됐던 많은 종목들이, 특히 '영미야'라는 유행어를 만들기까지 했던 컬 링이나 스켈레톤이나 봅슬레이 같은 이런 우리가 전혀 잘 몰랐던 종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두각 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가능성을 열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계스포츠의 저 력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계스포츠 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우리가 메달을 주로 따던 쇼트트랙과 스 피드스케이팅 말고 또 피겨 말고 스노보드라든가 스켈레톤이라든가 봅슬레이라든가 또 특히 컬링 같은 데서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 따고 하면서 다 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 다는 점……

(「그만하고 김영철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이 점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동계스포츠 종목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대한체육회와 각 연맹들과 함께 마련할 생각입니다.

○**유은혜 의원**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패럴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패럴림 픽에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150명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엊그제 실무회담 을 통해서 참가 인원이 선수, 임원 또 동행인 포 함해서 24명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리고 응원단이라든가 예술단은 이번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실무회담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은혜 의원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패럴림픽의 성공이 온전한 올림픽의 성공적 완성으로 매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럴림픽도 마찬가지로 평화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설과 북폭설이 난무하던 작년 연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반도를 지켜봤고 평창 올림픽이 과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은 전쟁의 불안을 넘어서 평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평화 분위기를 반드시 이 어 가야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그 일각에서 평창 올림픽을 통한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를 폄훼하고 애써서 평창 올림픽의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염치도 없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장내 소란)

들으세요!

평화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 드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패럴림픽도 평화 올림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재철 유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북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 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심재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

러분!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김영철의 방문으로 인해서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고 또 국론이 분열되어서 그이유를 좀 들어 보자 하고 야당이 요구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기 마지막 날 밤 8시가 넘어가는 이 순간에 아주 궁색스럽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뚜렷한 여야의 차이를 극명하 게 확인하고 있고 또 여야의 대립을 중재해야 될 국무위원들의 공감 없는 답변은 정말 저를 우려 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남북 평화통일의 먼 길은 야당과 국민의 동참이 없이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으로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과 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보여 준 수고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김영철의 방남으로 인해서 오늘 이처럼 국회가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민심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중심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김영철의 방한으로 정부가 얻은 것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또 정부가 잃은 것은 어떤 것이 있 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직 그런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김영철의 남한 방문 중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측에다가 할수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했다 하는점이 이번 김영철 방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평가를 합니다.

○정양석 의원 잃은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번 계기에 다시 이게 더 강화됐는지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갖

고 있는 입장 차이 같은 것이 드러난 것이 우리 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잃은 것이라기보다는 과 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남북관계에 특별히 경험 많은 장 관이 내정됐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 다. 그것은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우려하는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관으로 서 남북대화를 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바로 야당 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장관께서는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패를 인정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의 방문으로 천안함 유족들이 울부짖고 야당이 길거리에 나섰 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영철을 군사도로로 빼돌 리고 또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데 대화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만 났다는 사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언론과 국민에게 단 한마디 코멘트도 직접 하지 않았습 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랬을까, 김영철이 정말 소중한 대화 파트너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당하지 못 했습니다. 뭔가 '아차, 이것 문제가 있구나' 나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은 안 한다고 하는 북 · 미 대화를 김영 철은 와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 디어 또 흔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절묘 한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둥지둥댔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저자세로 보였습니다.

김영철은 북한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요? '나의 방문이 성공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터트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심리적 핵폭탄을 대한민국에 터트렸다. 내가 다녀온 것 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남남은 분 열이 되고 여야는 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다' 김 영철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 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영철이 성공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는 정부 책임,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부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 지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만 정부가 실패했다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을 통해서 북한의 대표단이 오는 이런 긴 과정 동안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저희가 북측과 협의에 임했고 또 그것을 위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에 진입하도록 하 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알겠습니다. 제발 그런 노력을 성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양석 의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게, 김영철에게 이것을 우리가 보여 줬습니다. 문재 인 정부, 조명균 장관은 참 쉬운 상대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는 참 쉽죠?' 이런 것을 보여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알아서 해 줬습니다. 직 접 말 안 해도 정부가 대변해 줬습니다. 또 여야 가 알아서 다툽니다. 김여정 방문에 문재인 대통 령 네 번, 국정원장·비서실장·총리까지 나섰습 니다. 김영남, 워커힐호텔에서 2박 3일간 하면서 우리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볼 때 알현으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전, 회담을 갖기도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이렇게 했습니다. '군사훈련 축 소하겠다' '마식령을 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장관은 '열병식은 우연한 일이다', 문정인 특 보는 '주한미군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 가', 최문순 지사는 '크루즈를 보내라, 아니면 만 경봉호를 이용해도 좋다'이런 이야기를 했습니 다.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정부가 회담도 하기 전에 줄 것을 다 줬습니다. 오죽하면 노동 신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단 공동 입 장, 응원단 파견, 예술단 공연 문제, 금강산과 마 식령 스키장 이용 문제 등은 모든 것이 남측에서 요청하고 여기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성사된 문제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장관은 성취감에 빠져 있지만 우리 국민들 허 탈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는지 제가 길 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 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나서 소위 평양세 계청년학생축전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

청난 적자로 힘들어했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은 오라고 그랬고 가 보니까 우리 체제 선 전에 보탬이 된다 그래서 기꺼이 왔습니다. 그 장을 우리가 만들어 줬던 겁니다.

김영철 방문에 대해서 저도 야당 의원이지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장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쉽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과 직접 관련이 없다', 저는 장관이 그런 답변보다는 '천안함에 비록 연루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 대화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야당, 이해해 주십시오'나는 이렇게 호소했더라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김영철에게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체제 옹호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핵 문제에 대해서 감히 우리 조명균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 겠는가, 저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뒤에는 우리 통일부장관과 문재인 정부 2000년 정상회담의 추억이 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보는 인식의 시계가 청 와대 비서관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 습니다. 북한과 만나면 인기가 올라가고 표가 나 오고 시드니·아테네 올림픽 때도 한반도기만 들 면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어떻습니까?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핵실험,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꼭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장관과 이 정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을 회동했습니다. 몇 번 만났고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고 핵 이야기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저는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과 두 차례 만났습니다. 두 차례 만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남 북관계 개선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없이 는 남북관계만 나갈 수가 없다,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 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하루빨리 시작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북측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정양석 의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직접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

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탄핵이 되어서 감옥에 있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선수단 참가를 앞둔 8월 15일 날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우리 정부는 떳떳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

이렇게 남남 갈등이 되고 국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함께하는 멀리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관 도의적으 로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 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제가 국익을 손상시 킨다든지 국민들께서 제가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바로 이 순간에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 나 지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정양석 의원 장관,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정양석 의원 여야가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그 런 문제가 모두 장관으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걸 아직도 인식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책임질 준비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저희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정양석 의원 자유한국당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남북대화 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긴 대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자리에 연연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양석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권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북대화, 남북관계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길 우리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강구해 주시고 또 정부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고치기 힘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정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 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 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안건들을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 38. 아동수당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 4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 4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기동민・김민기・김정우・정춘숙・권미혁・ 윤관석 · 윤소하 · 송옥주 · 위성곤 · 전혜숙 의원 발의)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시3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8항 아동수당법안 (대안), 의사일정 제39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40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 나오셔서 5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 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 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 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수 급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게 정하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조 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 며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도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 세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 박광온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 안을 통합 조정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및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 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 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수당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3인, 기권 7인 으로서 아동수당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8인, 반대 2인, 기권 4인 으로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 4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원장 제출)

(20시39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4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광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인숙 의원·심재권 의원·이찬열 의원·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 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에 따른 급별 분류 체계로 개편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감염병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마련하는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관리 체계를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 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국 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식 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서 의 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 5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신창현· 추미애 · 서형수 · 손혜원 · 신용현 · 김성수 · 송옥주·박경미 의원 발의)
- 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0시44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55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56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송희경**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경우에는 바로 결혼중개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결 혼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폐쇄 요건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김승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첫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 서 12개월로 확대하고,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며, 마지 막으로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한시적 인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 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각 부처 등이 의무 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의 절차를 추가하 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춘숙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 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범위를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오랜 시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8인, 기권 6인으로서 성 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제 준비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 정은 헌정특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법 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와야 처리가 가능합 니다.

현재 18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재석해 계시지요? 185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될 때까지 오늘 국회에 계셔야, 그 래야 우리 국회가 2월 임시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으시고, 또 저 녁을 거르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요기를 하시고,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제가 교섭단체대표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은 가능하 면 빠른 시간 내에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 서 오늘 회의가 종료되게 되니까 일단은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정회를 한 연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 데요.

의원님들 좀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2시를 지나면 차수 변경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정개특위의 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 통과를 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기다려 왔는데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이 안건 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 분들을 뵙기도 그렇고 또 전국의 지방선거를 준 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대할 면목이 참으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의 아 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 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고 제가 원내대표들과 함 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 지,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단의 대 책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내, 특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의석을 지켜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고 참으로 미안 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여러 분들도 답답한 심정이겠지만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해결하지 않고 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는 어려

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함께 지 혜를 모아서 우리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 록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원 金成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종 대 김 종 훈 김 종 석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선 박 주 민 박 주 혀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손 금 주 송 영 길 송옥주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상 수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원 유 철 위 성 곤 유기준 우 워 식 유동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동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명수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용기 정성호 정세 균 정 운 천 정유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하 태 경 한 선 교 표 창 원 홍문표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회 반대 의원(1인)

홍 철 호

황

기권 의원(1인)

박 대 출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金成泰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재 호 박 박 주 민 정 박 주 혀 박 찬 대 박 홍 근 백재 백 혜 련 서 영 교 현 손 혜 원 소 병 훈 손 금 주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영 길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재 철 심 상 정 안 규 백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동수 유민봉 유 성 엽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소 하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은 권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학 영 이태규 이 허 승 이혜훈 훈 인 재 근 이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지 상 욱 진 선 미 천정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노 회 찬

민병두

박 남 춘

박 성 중

박 인 숙

박 주 선

백 승 주

서 형 수

송 기 헌

송 희 경

심기준

안 민 석

어 기 구

오 영 훈

유 기 준

유 승 민

윤 상 현

윤 종 필

이 만 희

이석현

이 완 영

이장우

이종명

이 찬 열

이 춘 석

이혀재

임 이 자

전 재 수

정 갑 윤

정용기

정 재 호

제 윤 경

조 응 천

최도자

추경호

한 선 교

홍 영 표

황 영 철

영

진

### 반대 의원(2인)

회

황

박 덕 흠 홍 철 호

기권 의원(3인)

김 명 연 박 대 출 이 동 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3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성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두 관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철 민 김 진 태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용진 박 인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형 서 형 수 백 혜 려 서 영 교 손 혜 원 소병훈 손 금 주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송 석 준 송 영 길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워 유 철 우 원 식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언주 이 은 권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진복 이종배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인 재 근 임 이 자 0 훈

장 정 숙 장 병 완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옂 천정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 기권 의원(3인)

곽 상 도 이장우 정 종 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두 관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병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金成泰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김 현 권 워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순 자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설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기 헌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상 수 어기구 안 호 영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석 현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circ$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성호 정 갑 윤 정용기 정세균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조 배 숙 정춘숙 제 윤 경 조경태 주 승용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지 상 욱 진 선 미 천 정 배 짓 영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4인) 박성중 신 창 현 위 성 곤 주 호 영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미혁 권성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식 김세연 김 성 원 金成泰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영 훈 우 상 호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민봉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성 엽 유 승 민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만 희 이명수 이 동 섭 이 상 민 이 수 혁 이석혀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재정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규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태규 이 헌 승 이 혜 훈 0 임이자 장 병 완 훈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주 승 용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추 경 호 추 미 애 최 인 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15인)

곽 대 훈

백 승 주

곽 상 도

심 재 철

김용 태

엄용수

박 성 중

윤 종 필

이 상 돈 이 장 우 이정현 이현재 주 호 영 전 희 경 최 운 열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수민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재 김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문 희 상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경욱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순 자 박용진 박 재 호 박 주 혀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설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신용 현 송 희 경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윤 상 현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동섭 이만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인 영 이장우 이 원 욱 이재정 이종구 이종명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춘석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학 영 이태규 이 헌 승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병국 전 희 경 정 동 영 정세균 정 운 천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영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2인)

박 완 수 안 규 백

#### 기권 의원(12인)

김 세 연 김 승 희 민 홍 철 박 덕 흠 박 성 중 박 찬 대 박선숙 백 승 주 안 민 석 유 은 혜 이 은 권 이 현 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곽 상 도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광 수 김기선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세 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순 자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설 송 석 준 송옥주 송 영 길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호중 윤 후 덕 이동섭 이개호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인영 이장우 이 원 욱 이재정 이종구 이종명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인 재 근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장 병 왂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천정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7인) 곽 대 훈 박 대 출 박 성 중 이 은 권 이 찬 열 이 헌 승 전 희 경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호 강석 진 강 효 상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김경수 김 광 수 기 동 민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성식 김 성 원 金成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한 표 김 해 영 김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병 석 박 남 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옥 주 송 기 헌 송 영 길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원 식 오 영 훈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윤 호 중 윤 종 필 윤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혀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용호 이 인 영 이 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혜훈 0] 후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병 국 정 동 영 정 성 호 정세균 정 운 천 정용기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미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철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화 회

#### 반대 의원(2인)

박 대 출 박 성 중

#### 기권 의원(14인)

곽 대 훈 김 승 회 김용 태 나 경 원 백 승 주 심 재 철 이 은 권 이장우 이종구 이 현 재 정 유 섭 정 종 섭 최 연 혜 추경호

(최연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7인, 기권 의원 14인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성 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 광 온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손 금 주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상 호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소 하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동 섭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주 영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응 천 주 승 용 조 승 래 조 정 식 진 선 미 짓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최 인 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홍 의 락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1인)

전 희 경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0인)

강 병 원 강석호 강 길 부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미혁 권 성 동 권칠승 금 태 섭 김 경 수 김 광 수 기 동 민 김기선 김 동 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창 현 신 용 현 심 기 준 심상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민 봉 유기준 유동수 유 은 혜 유 재 중 유성엽 유 승 민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개호 이 만 희 이명수 이 동 섭 이 수 혁 이상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은 권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 정 혀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현재 이혜훈 인 재 근 훈 임 이 자 임 종 성 0]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세 균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진 영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2인) 김용 태 정 유 섭 기권 의원(10인) 곽 대 훈 김 명 연 김정재 金成泰 김 종 훈 박선숙 박 성 중 이 장 우

이종구

최 연 혜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7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광 수 김 도 읍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병 욱 김 삼 화 김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식 김성원 김세연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정 재 김 종 대 김 김 종 석 김 종 회 종 훈 김 중 로 김 김 철 민 김 학 용 김 진 태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병두 문 진 국 민 경 욱 박 경 미 광 온 민홍 철 박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완 주 박 완 수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정 박 찬 대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석 준 옥 주 송 희 경 송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 기 준 위성 곤 유동수 유민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 석 혀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용 호 이 원 욱 이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훈 이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 동 영 정세균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홧 회

#### 반대 의원(1인)

김용 태

#### 기권 의원(5인)

박 선 숙 박 성 중 이 상 돈 정 유 섭 황 주 홍

(김도읍·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7인, 기권 의원 5인임)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동 철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재 김 종 대 김종민 김종훈 김 종 회 김 중 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홍 철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워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오 신 환 염 동 열 오 영 훈 원 유 철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호 중 윤 종 필 윤 후 덕 이 개호 이 만 희 이명수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상 돈 이석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워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정 동 영 전 혜 숙 전 회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영 최도자 천정배 최경화(평)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1인)

박 대 출

#### 기권 의원(4인)

권 성 동 김 용 태 유기준 이 종 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경 대 수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금 태 섭 권성동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세연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민 경 욱 노 회 찬 문 희 상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남 춘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정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훈 소 병 훈 설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신 용 현 송 희 경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어 기 구 안 호 영 엄용수 양 승 조 염 동 열 유동수 오 신 환 워 유 철 유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후 덕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헌 승 훈 인 재 근 0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운 열 추경호 최 연 혜 최인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기권 의원(4인)

박성중

백 승 주

유기준

이현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15인)찬성 의원(21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경 수 김 광 수 김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석기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정 우 김 정 재 김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정 훈 김 종 훈 김종회 김 중 로 김 진 태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노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성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백 혜 련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신 동 근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영 훈 원 유 철 유 기 준 유민봉 유동수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종 필 유 호 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양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0 이 현 재 훈

회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정병국 정성호 전 희 경 정 갑 윤 정용기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천 정 배 최경환(평) 진 영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기권 의원(1인)

곽 상 도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2인)

강석호 강 창 일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훈 식 곽 대 훈 강 효 상 경 대 수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광 수 김 경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정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회 찬 문 희 상 남 인 순 노 웅 래 민경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병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신 환 우 워 식 워 유 철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은 권 이장우 이 원 욱 이 인 영 이정미 이종구 이 재 정 이정현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헌 승 이현재 인 재 근 임 이 자 0] 훈 전 재 수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운천 정성호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재 호 정 춘 숙 정 진 석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주 승 용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경환(평)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기권 의원(3인)

강석 진 손 금 주 주 호 영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강 효 상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광 수 김기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재 경 김 정 우 김 김 정 훈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현 박 정 박주민 박 주 선 백 재 현 박 찬 대 박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려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송 석 준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심 상 정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은 혜 유 재 중 유성엽 유 승 민 유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윤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수 혁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 ㅁ]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진복 이 종 배 이 찬 열 이채익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영 진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1인)

추경호

(김재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0인, 기권 의원 1인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광 수 김 규 환 기 선 김 도 읍 김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명 연 김민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 수 민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우 김 재 경 김 정 훈 김종민 김정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종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회 찬 민 경 욱 민병두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성중 박 순 자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완 수 박 주 민 박 주 선 박 박 주 혀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백 혜 련 서 형 수 설 훈 손 금 주 송 기 헌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심 재 철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이 동 섭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은 권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 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인 재 근 임이자 이 현 재 훈 이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성호 정운천 정용기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인 화 정진석 정 춘 숙 제 유 경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미 애 표 창 원 최 인 호 하태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기권 의원(3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4인)

이 개 호

유 영 일

추경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권 석 창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남 춘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유동수 유기준 유민봉 유성엽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재 중 유 상 직 윤 상 현 유 소 하 윤 영 일 유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허 승 이 혀 재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이 훈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병국 정 갑 윤 정 성 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인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제 윤 경 정 춘 숙 조경태 조 배 숙 주 승 용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미 애 최 인 호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홧 회

#### 기권 의원(2인)

곽 대 훈 추경호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19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곽 상 도 경 대 수 권 석 창 권 미 혁 권성동 금 태 섭 김 경 수 김 경 진 기 동 민 김 규 환 김기선 김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원 김 수 민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정 재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진 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박 광 온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서 영 교 련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송 영 길 신 동 근 신 용 혅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원 혜 영 원 유 철 유기준 유민 봉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성 엽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상 돈 이 동 섭 이명수 이 수 혁 이 양수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0] 후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전재수 전 해 철 숙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진 석 정유섭 정재호 정춘숙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추 미 애 최도자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홍 익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4인) 곽 대 훈 김세연 박 성 중 정 종 섭 기권 의원(14인) 강 효 상 김성식 김 종 석 김 현 권 박 완 수 유 의 동 박 선 숙 서 형 수 윤 영 일 이 만 희 이 현 재 조 경 태 최 연 혜 최 운 열

(김세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99인, 반대 의원 4인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58인)

강 병 원 강 길 부 강 창 일 강 훈 식 권 미 혁 경 대 수 권 석 창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광 수 김 두 관 김 경 협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병기 김 병 욱 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김수민 영 진 영 호 김 세 연 김 김 김정우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ㅁ]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유동수 유 승 민 원 혜 영 유 성 엽 유 은 혜 유 의 동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정미 이 재 정 이정 이종명 이 찬 열 이철희 혅 이 춘 석 이 학 영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정 전 재 수 장 숙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동 영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정 함 진 규 한 애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철 호

####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5인)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진 태 김 기 선 박 대 출 박 성 중 박 완 수 엄용수 유 재 중 이 은 권 이 주 영 이 현 재 주호영 추경호 홍 문 표

#### 기권 의원(29인)

강석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김 도 읍 김무성 金成泰 김용 태 김 정 재 김 종 석 나 경 원 문 진 국 김 한 표 민경욱 박 순 자 안 상 수 원 유 철 유기준 윤 상 현 윤 종 필 이 만 희 이 와 영 이 종 구 이종배 전 희 경 정 갑 윤 정 유 섭 정진석 조 경 태 최 연 혜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효 상 강석 진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무 성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병 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광 온 박 대 출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와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송 기 헌 송 석 준 손 혜 원 송 희 경 송 영 길 송옥주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영훈 원 유 철 오 신 환 유 동 수 유민봉 유성엽 워 혜 영 유 은 혜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상 현 유 영 일 윤 재 옥 유 소 하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찬 열 이 학 영 이철희 이 춘 석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동 영 정병국 정 갑 윤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인화 정 유 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천 정 배 최도자 영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주 홍 황 회

#### 반대 의원(1인)

곽 상 도

#### 기권 의원(12인)

곽 대 훈 김기선 김용 태 김 정 재 김 진 태 박성중 유기준 윤 종 필 이 주 영 전 희 경 조경태 최경환(평)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 찬성 의원(202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진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진 김 광 수 김 경 협 김기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병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세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용 태 김 정 재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민

이 주 영

#### 기권 의원(7인)

강 효 상 박 성 중 박 완 수 송 기 헌 유기준 윤 종 필 홍 일 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식 김 성 원 金成泰 김 순 례 김세연 김 수 민 김 영 우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영 진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철 민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민홍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완 주 박 선 숙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홍 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백 혜 서 영 교 련 서 형 수 설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소 병 훈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수 혁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양 수 이 완 영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정 이종구 혅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현재 이 헌 승 0] 혜 훈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조 경 태 제 윤 경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옂 천 정 배 진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최인호 추 미 애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문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2인)

백 승 주 정 갑 윤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세 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회 찬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박 찬 대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설 송 석 준 송옥주 송 영 길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상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우 원 식 원 유 철 오 신 환 오 영 훈 워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호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 원 욱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현재 이 헌 승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주 승용 주호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추 미 애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일 표 홍철호 황 주 홍 황 희

#### 기권 의원(3인)

김무성 양 승 조 이 상 돈 (윤호중 의원 착오로 김경협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0인, 찬성 의원 187인임)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식 金成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재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김 현 아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박 주 선 박 주 혀 정 박 찬 대 박홍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손 혜 원 신용 현 심기준 신 동 근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 은 권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차 열 이철회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훈 인 재 근 장 병 완 0]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 응 천 제 윤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철호 황 주 홍 홧 회

#### 기권 의원(2인)

금 태섭 이 개호

(윤호중 의원 착오로 김경협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7인, 찬성 의원 195인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수 김 광 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정재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나 경 원 노 웅 래 김 현 아 남 인 순 민 경 욱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홍근 백 승 주 백 혜 서 영 교 련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우 원 식 오 영 훈 원 혜 영 위성 곤 원 유 철 유기준 유민 봉 유동수 유 성 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동 섭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은 권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정미 이 재 정 이 정 혅 이 종 구 이 주 영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장 병 완 장 정 숙 임 종 성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인 화 정 재 호 정유섭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일 표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2인)

이인영 최도자

(윤호중 의원 착오로 김경협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2인, 찬성 의원 190인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8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금 태 섭 김 광 수 기 동 민 김경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대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홍 근 박 찬 대 백 승 주 서 영 교 서 형 수 백 혜 련 송 영 길 설 훈 소 병 훈 송 석 준 송옥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호 영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워 혜 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성엽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명수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민 이석현 이수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재 정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정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철희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병국 전 희 경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유섭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응 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인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함 진 규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철호 황 주 홍 홍일 표 홧 회 기권 의원(7인) 권 성 동 강 효 상 김 종 민 이 상 돈 정 인 화 최 연 혜 추경호 (윤호중 의원 착오로 김경협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5인, 찬성 의원 188인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상 도 권 석 창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김경수 기 동 민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도 읍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영 진 김 영 호 김 승 희 김 김 정 우 김 재 경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태 년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우 원 식 염 동 열 오신 환 오 영 훈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 동 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정 이 종 구 이 주 영 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희 이 춘 석

#### 반대 의원(2인)

권성동 김용 태

#### 기권 의원(9인)

박 완 수 곽 대 훈 김 민 기 나 경 원 심 재 철 이 헌 승 전 희 경 조 경 태 최 연 혜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0인, 기권 의원 9인임)

##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0인)

강 병 원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병 욱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아 김 해 영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경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순 자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혀 박 찬 대 박 홍 근 서 영 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엄용수 오 신 환 워 유 철 워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 성 엽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 은 권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재정 이정미 이 인 영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종배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인 재 근 0 훈 임이자 임 종 성 전 해 철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 병 국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유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주 호 영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천정배 진 영 최도자 최 연 혜 최 인 호 추경호 최 운 열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홧 회

#### 기권 의원(7인)

강석진 김 민 기 김용 태 김 철 민 백 승 주 백 혜 련 유 재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강석 진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金成泰 김 세 연 김 성 원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회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한 정 김 한 표 김 철 민 김 해 영 나 경 원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박 주 민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송 석 준 설 송 영 길 송 옥 주 신용 현 송 희 경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안 호 영 어기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원 혜 영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유 호 중 이군현 유 후 덕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재정 이 원 욱 이 인 영 이정미 이정 쳙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옂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이혜훈 인 재 근 재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젉 재 수 젉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주 호 영 조 정 식 주 승용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한 정 애 황 주 홍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회

#### 기권 의원(1인)

이개호

(천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1인임)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 찬성 의원(18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석 기 김성수 김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원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영 김용 태 김 ठे 김정우 정 김 재 경 김 김 종 대 재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희 상 경 민홍철 문 진 국 민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혜 련 밴 재 혅 백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송 영 길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용 혅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원 혜 유동수 영 유 기 준 유 재 중 유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영 일 윤 재 옥 이 군 현 이동 이 만 희 윤 호 중 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양수 이 언 주 이용주 0 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정미 이정현 이 주 영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회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읶 이자 임 종 성 장 병 장 정 숙 왂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전 혜 정 갑 윤 정 동 영 숙 정 병 국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주 승 용 주 호 영 조 승 래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주 홍	황 희	
반대 의원	(1인)			
이 현 재				
기권 의원(10인)				
강 효 상	곽 대 훈	金成泰	김 승 희	
김 한 정	윤 종 필	윤 후 덕	이 개 호	
조 경 태	최 연 혜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5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도 읍 김 무 성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한 정 김 철 민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용 현 신 창 현 송 희 경 심기준 심상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 민 봉 유기준 유동수 유 재 중 유성엽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수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 용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종명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혀 재 이 혜 훈 이 후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용 기 정 유 섭 정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주 호 영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천 정 배 최 운 열 진 영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황 주 홍 황 홍 철 호 회 기권 의원(7인)

강석진 곽 대 훈 곽 상 도 김 승 희 남 인 순 임 이 자 최 연 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금 태 섭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기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석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 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박 주 선 정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설 훈 송 영 길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상정 안 민 석 안 상 수 심 재 철 안 규 백 어 기 구 엄용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워 식 오 신 환 워 유 철 워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성엽 유재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호중 윤 후 덕 윤 종 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철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용기 정 병 국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회

#### 기권 의원(2인)

전 해 철 황 주 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4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기 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삼 화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세연 김성원 金成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나 경 원 노 웅 래 김 현 아 남 인 순 민 경 욱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송 석 준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옥 주 송 영 길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민봉 유동수 유 성 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명수 이 상 민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수 혁 이용주 이 양 수 이 언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진복 이 종 구 이 종 배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현 재 이 혜 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전 해 철 전 혜 숙 장 정 숙 전 재 수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정 진 석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기권 의원(10인) 곽 상 도 김 승 희 김용 태 심 재 철 엄용수 윤 상 직 윤 종 필 이 헌 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경호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전 희 경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효 상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칠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규 화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정재 김 종 대 김종회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문 희 상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재 호 박 완 주 박용진 박인숙 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정 백 승 주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기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용 주 이양수 이 언 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명 이 종 배 이종구 이진복 이 차 열 이 채 익 이철회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인 재 근 0] 훈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용 기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조경태 조 승 래 조 정 식 제 윤 경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정배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 기권 의원(1인)

김 종 훈

(김재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9인, 기권 의원 1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강 효 상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창 일 곽 대 훈 곽 상 도 권미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수 金成泰 김 수 민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정 우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종민 김 종 회 김종훈 태 년 김 중 로 김 철 민 김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금 주 설 훈 송 석 준 송옥주 손 혜 원 송 영 길 신용 현 송 희 경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상 정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엄용수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의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재 옥 윤 호 중 윤 종 필 이개호 이 군 현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동 섭 이 상 민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진복 이종배 이 차 열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0] 훈 장 병 완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갑윤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춘숙 조경태 제 윤 경 조 승 래 주 승 용 주호영 조 정 식 지 상 욱 영 천 정 배 진 선 미 진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 기권 의원(3인)

박 광 온 윤 영 일 정성호 (김재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3인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1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권미혁 권 석 창 권 성 동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 동 철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수민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종 대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석 김종민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노 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민홍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 창 현 신용 현 심 재 철 안 민 석 심 기 준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 의 동 유성엽 유재중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 언 주 이용 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은 권 이 재 정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혜 훈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0] 인 재 근 장 병 완 후 임 이 자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유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정배 최 도 자 최 연 혜 최인호 최 운 열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 기권 의원(7인)

곽 상 도 김용 태 심 상 정 위성 곤 이정미 이 헌 승 이 현 재 (심상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1인, 기권 의원 7인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기선 김 광 수 김 도 읍 김 규 환 김동철 김 두 관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수민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정 박 주 선 백 재 현 박 주 현 박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기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유 영 일 윤 재 옥 유 종 필 유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수 혁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용 득 이 용 주 이용호 이 워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춘석 이 학 영 이 혜 훈 훈  $\circ$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희 경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선미 진 영 최 연 혜 천 정 배 최 운 열 최도자 최 인 호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 반대 의원(1인)

김 현 권

#### 기권 의원(4인)

곽 상 도 위 성 곤 이 헌 승 이 현 재 (김현권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4인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도 읍 김 기 선 김 두 관 김 동 철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수 민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홍 철 박 광 온 민 경 욱 박 경 미 박 병 석 박 남 춘 박 선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석 준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현 이 재 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혜 훈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갑 윤 정성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응 천 조 승 래

주 호 영

조 정 식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도자 최 연 혜 최인호 추경호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표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반대 의원(2인)

이 헌 승 정 종 섭

#### 기권 의원(14인)

김 규 환 김용 태 김종 대 노 회 찬 박성중 박 완 수 설 훈 유민봉 윤 재 옥 유재중 이정미 이 종 구 이 채 익 조경태

(이정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0인, 기권 의원 14인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51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권 미 혁 곽 대 훈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수 金成泰 김성식 김성원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종민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문 희 상 박 경 미 민 경 욱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기 헌 송 영 길 손 혜 원 송옥주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안 상 수 심기준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민봉 윤 재 옥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영 일 윤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상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용 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재 정 이정현 이 찬 열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혜 훈 훈 인 재 근 0]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임 이 자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천 정 배 최도자 영 최경환(평) 최 운 열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 반대 의원(11인)

김무성 김 순 례 김 용 태 김 종 훈 박 성 중 박 완 수 백 승 주 이진복 이 현 재 주 호 영 홍철호

#### 기권 의원(32인)

곽 상 도 김 선 동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노회 찬 민홍철 박 대 출 서 영 교 송 석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어 기 구 엄용수 유기준 유 재 중 윤 상 직 이 만 희 이 인 영 이정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헌 승 전 희 경 지 상 욱 추 경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관 영 김 규 환 김기선 김무성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희 상 민 경 욱 박 남 춘 박 경 미 박 광 온 민 홍 철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선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 기권 의원(1인)

유기준

한 정 애

홍 일 표

(이진복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5인, 기권 의원 1인임)

홍 영 표

홍 익 표

함 진 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6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금 태 섭 김 경 협 기 동 민 김경수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동 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수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영 진 영 호 김용 태 김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희 상 민 경 욱 문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선숙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정 박 홍 근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심기준 신 용 현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우 원 식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위혜영 워 유 철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개호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동 섭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워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짓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영 표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일 표

#### 기권 의원(5인)

박성중 김 태 흠 이 종 걸 이 현 재 정 운 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54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훈 식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경수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동 철 김기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세 연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석 김종민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노 웅 래 민 경 욱 노 회 찬 문 희 상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민홍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정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손 금 주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옥주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호 영 안 민 석 안 상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워 혜 영 유동수 유기준 유성엽 유 의 동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후 덕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이개호 이 동 섭 이명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 주 영 이종걸 이종명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영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 운 천 정 인 화 정진석 조 응 천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주 승용 조 정 식 진선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최 인 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 반대 의원(9인)

곽 상 도 김 승 희 김용 태 박 대 출 박 성 중 박 완 수 이 만 희 정 갑 윤 정용기

#### 기권 의원(25인)

곽 대 훈 권 미 혁 강석 진 김 도 읍 김 상 희 김성원 김 현 권 金成泰 남 인 순 박 인 숙 백 승 주 심 재 철 엄용수 유 민 봉 이 상 돈 유 재 중 이 종 구 이종배 이 헌 승 이 현 재 전 희 경 주호영 임 이 자 정 유 섭 최 연 혜

(권미혁·김현권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4인, 기권 의원 25인임)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5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두 관 김민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 성 워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호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종 대 김 정 재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박 경 미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선숙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혀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송 기 헌 원 송 옥 주 송 석 준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오 영 훈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 반대 의원(1인)

박 성 중

#### 기권 의원(5인)

기동민 백승주 이현재 인재근 정춘숙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76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선 숙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오세 정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미 이재정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혜훈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갑 윤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인화 정진석 제 윤 경 조 승 래 주 승용 주 호 영 조 응 천 조 정 식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도자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기권 의원(12인)

곽대훈 기동민 김광수 김해영 박성중 신동근 이장우 이현재 인재근 정춘숙 최연혜 최운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구묘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성동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영 우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백 승 주 박 주 현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양 승 조 어 기 구 안 상 수 안 호 영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오 영 훈 위 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원 욱 이정미 이 인 영 이재 정 이정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희 경 정 성 호 정용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진석 제 윤 경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승 래 주 승 용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기권 의원(6인) 기 동 민 김 현 권 이장우 0] 훈 인 재 근 정 춘 숙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광 수 김기선 김 규 환 김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김 현 아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정 박 홍 근 백 승 주 박 주 현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동 근 안 규 백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정 오 영 훈 원 유 철 오 신 환 우 원 식 위 성 곤 유동수 워 혜 영 유기준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개호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군 현 이 동 섭 이만희 이명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재정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찬 열 이 헌 승 이 현 재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인 화 정진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짓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 기권 의원(6인)

기 동 민 강 훈 식 김 선 동 김 현 권 인 재 근 정 춘 숙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6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훈 식 강석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금 태 섭 김경수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도 읍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 동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현 권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광 온 박 병 석 박 남 춘 박 대 출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용 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송 석 준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아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훈 우 원 식 워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민 봉 유 의 동 유성엽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종걸 이 종 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희 이 학 영 이혜 이 헌 승 이현재 훈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진석 제 윤 경 조 응 천 조 승 래

주 호 영

지 상 욱

주 승 용

조 정 식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홍 영 표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일 표 기권 의원(5인) 기 동 민 유 재 중 이장우 인 재 근 정 춘 숙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2인)

강 창 일 강 병 원 강 석 진 강 훈 식 권미혁 권성동 금 태 섭 김 경 수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영 우 김 영 진 김 순 례 김 승 희 김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정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와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성 중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주 선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동 근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어 기 구 엄용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오세 정 오 영 훈 오 신 환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 기 준 유민봉 유성엽 유동수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윤 재 옥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수혁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언 주 이용호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재 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 종 구 이종명 이 주 영 이진복 이종배 이 학 영 이 찬 열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0]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정 갑 윤 전 혜 숙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운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진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천 정 배 진 선 미 진 영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홍 영 표 최 인 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익 표 홍일 표

## 기권 의원(9인)

곽 대 훈 곽 상 도 김 병 관 기 동 민 인 재 근 전 희 경 박 대 출 이장우 정 춘 숙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김경수 김 경 협 금 태 섭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 세 연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주 현 백 승 주 백 재 현 박 홍 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옥 주 송 기 헌 송 석 준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원 유 철 원 혜 영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 군 현 이동섭 이 만 희 이명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장 우 이재정 이종걸 이종구 이정미 이정현 이종배 이 주 영 이종명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circ$ 훈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혜 숙 전 재 수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용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유 섭 정 진 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 용 지 상 욱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최인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영 표 홍 일 표

#### 기권 의원(8인)

기 동 민 박 대 출 박 성 중 유기준 이 상 돈 이 차 열 인 재 근 정 춘 숙

#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7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훈 식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광 수 김 경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무 성 김 병 욱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 세 연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정우 김정재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김 현 아 문 희 상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찬 대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언 주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인 화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 반대 의원(1인)

이 주 영

#### 기권 의원(12인)

권성동 김 재 경 김 한 표 박 성 중 박 완 수 백 승 주 엄용수 유기준 이 만 희 이 헌 승 정진석 정 갑 윤

##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 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곽 대 훈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미혁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광 수 김경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남 인 순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 중 박 완 주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소 병 훈 손 금 주 서 형 수 손 혜 원 송 영 길 송 옥 주 송 기 헌 송 희 경 신 용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세 정 오 영 훈 우 워 식 오 신 환 원 유 철 위성 곤 유 기 준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의 동 유재중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만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양수 이 언 주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재정 이정미 이정 혅 이종걸 이 주 영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헌 승 이 현 재 이혜훈 0]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워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운천 정 인 화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주 승용 주호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옂 천 정 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정

훈

홍 철 호

## ○아동수당법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48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협 금 태 섭 광 수 김 도 읍 김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김 병 욱 김 삼 화 7] 김 상 훈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정우 김 종 대 김종훈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중 로 김 태 년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병두 박 덕 흠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영 선 박용진 박인숙 박 재 호 박 주 선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후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안 규 백 심 기 준 심 재 권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위성곤 우 워 식 워 유 철 유동수 유민 봉 유 은 혜 유성엽 윤 영 일 윤 후 덕 윤 재 옥 윤 종 필 윤호중 이만회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용호 이 은 권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희 이춘석 이 학 영 이 해 차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혜 숙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재호 정 종 섭 정진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진 선 미 조 정 식 최경환(평) 최 도 자 최 운 열 한 정 애 추 미 애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황 회 반대 의원(3인)

곽 대 훈 정 갑 윤 최 연 혜

#### 기권 의원(7인)

김기선 김용 태 박 성 중 심 재 철 윤 상 직 홍 철 호 전 희 경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5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석 창 금 태 섭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기 선 김 도 읍 무 성 김민기 김 김 김 병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성식 성 원 김성 태 김 김세연 김 순 례 승 회 김 영 진 김 김정우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태 년 한 정 김 한 표 김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회 찬 노 웅 래 민 경 욱 문 진 국 민 홍 철 민병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 진 박 인 숙 박 정 박 재 호 박 주 선 박 찬 대 백 승 주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소 병 훈 설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옥 주 송 희 경 송 기 헌 신 동 근 심 기 준 신용 현 신 창 현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위성 곤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유 동 수 유민봉 유성엽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영 일 유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이 만 희 이명수 윤 호 중 이 수 혁 이 상 돈 이양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차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 양 석 정 재 호 정진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함 진 규 홍 익 표 애 홍 영 표 황 회

#### 반대 의원(2인)

정 종 섭 홍 철 호

#### 기권 의원(5인)

김 용 태 박 덕 흠 박 성 중 심 재 철 전 희 경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7인, 기권 의원 5인임)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강석 진 강 병 원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경 협 김광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진 표 김 학 용 김 해 영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혀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병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손 금 주 설 후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상 수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민봉 유성엽 유동수 윤 상 직 유 은 혜 윤 영 일 윤 재 옥 유 종 필 유 호 중 유 후 덕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 양 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채익 이 철 희 인 재 근 이춘석 이 학 영 이 해 차 임이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양석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워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회

#### 기권 의원(1인)

전 희 경

(백재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67인, 기권 의원 1인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권미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도 읍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성태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종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태 년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남 인 순 김 현 아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경 미 박 덕 흠 박 병 석 박성중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백 재 혀 서 형 수 소 병 훈 설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상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은 혜 윤 영 일 유 성 엽 윤 상 직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윤 호 중 이명수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양 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인영 이정미 이재정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채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장 제 원 전 혜 숙 전 해 철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 재 호 정진석 제 윤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회

#### 반대 의원(1인)

정 종 섭

#### 기권 의원(1인)

이 수 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선 동 김성 태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정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반 박 주 선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염 동 열 어 기 구 오 영 훈 우 원 식 오 신 환 오 제 세 워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명수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 주 영 이 채 익 이 학 영 이 춘 석 이철희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익 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회

#### 기권 의원(3인)

곽 대 훈 전 희 경 최 연 혜 (심상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3인, 기권 의원 3인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석 창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기선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무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재 경 김용 태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태 흠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남 인 순 김 현 권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재 호 박용진 박 정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손 금 주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오 제 세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후 덕 이 만 희 윤 호 중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성 호 정세균 정양석 정재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제 윤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도 읍 김무성 김 민 기 김 동 철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종 대 김종민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아 김 현 권 남 인 순 노 웅 래 민병두 민 경 욱 노 회 찬 문 진 국 박 대 출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영 선 박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창 현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오 영 훈 오 제 세 위성 곤 유민 봉 유기준 유동수 윤 영 일 유 은 혜 윤 상 직 유 성 엽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양수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미 이재정 이 종 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헌 승 이 해 찬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미 애 추경호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철호 황 회

#### 기권 의원(1인)

손 혜 원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곽 대 훈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기 동 민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광 수 김기선 김 도 읍 김 규 환 김 동 철 김무성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 세 연 김 순 례 김성 태 김용 태 김 승 희 김 영 김 재 경 진 김정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현 권 현 아 남 인 순 노 웅 김 김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혜 서 형 수 련 서 영 교 훈 소 병 손 혜 원 설 훈 송 기 헌 송옥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영 훈 오 제 세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 동 수 유민 봉 유 은 혜 유성엽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유 후 덕 이만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수혁 이 양 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 종 걸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채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장 병 완 임이자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유 정성호 정 세 균 정양석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선미 최경환(평)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황 주 홍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회

기권 의원(1인) 손 금 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1인)

강 석 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곽 상 도 강 효 상 경 대 수 권 미 혁 권 석 창 금 태 섭 칠 승 권 기동민 김 광 수 김 도 읍 김동철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선 동 김 성 식 김성원 김 성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회 태 김 영 김 영 용 재 경 진 ठे 김 태 김 김정우 김정재 김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중 로 김 진 표 김 김 태 년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성중 박 영 박용진 선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홍 근 백 재 현 박 찬 대 백 승 주 백 혜 서 영 교 훈 련 서 형 수 설 손 금 주 송 기 헌 소 병 후 손 혜 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상 수 아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양수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은 재 0 재 정 이정미 이종 걸 이종명 0 종 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학 재 이 헌 승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와 장 정 숙 전 해 철 전 재 수 혜 숙 정 갑 윤 전 정 성 호 정세균 정 양 석 정 운 천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제 윤 경 조 경 조 승 래 응 천 조 정 식 태 조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익 표 홍일 표 홍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반대 의원(1인)

김 규 환

#### 기권 의원(4인)

곽 대 훈 김 기 선 이 수 혁 전 희 경 (김규환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1인, 반대 의원 1인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 찬성 의원(174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석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칠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기 선 김 도 읍 김동철 김무성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 광 온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손 금 주 손 혜 원 송 옥 주 송 기 헌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상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 민 봉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 은 혜 윤 영 일 윤 상 직 유 재 옥 유 종 필 유 호 중 유 후 덕 이 만 희 이명수 이수혁 이 양 수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원 욱 이재정 이정미 이종명 이 종 걸 이종배 이 주 영 이채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차 임 종 성 이 헌 승 인 재 근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전재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운천 정재호 정진석 정 종 섭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응 천 조 승 래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1인)

김 민 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강 창 일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곽 대 훈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영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종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회 찬 노 웅 래 문 진 국 민 경 욱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진 박 주 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백 재 혀 서 형 수 성일종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양 승 조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위성 곤 유동수 유 민 봉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수혁 이양수 이 원 욱 이용호 이 은 권 이 인 영 이정미 이종걸 이재정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헌 승 임이자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정 갑 윤 숙 전 희 경 정세 균 정 우 택 정성호 정양석 정 운 천 정진석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춘 숙 제 윤 경 조경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철 호 홍일 표 황 주 홍 홧 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8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무 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선 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 영 진 김 승 희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정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민 경 욱 민병두 박 광 온 민 홍 철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찬 대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신 동 근 송 옥 주 송 희 경 신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기준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오 신 환 오 영 훈 위성 곤 오 제 세 우 원 식 원 유 철 유기준 유민봉 유성엽 유동수 유 은 혜 유 관 석 윤 상 직 유 종 필 윤 호 중 이 만 희 이명수 이수혁 이 양수 이 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정 숙 전 해 철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재 호 정진석 정 종 섭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환(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6인)

김 태 년 박성중 소 병 훈 이 상 돈 이 은 재 전희경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3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석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광 수 김 경 협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 순 례 김성태 김 영 호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재 경 김정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태 흠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문 진 국 민 병 두 노 회 찬 민 경 욱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출 박 덕 흠 박 병 석 박성 중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용진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정 백 재 현 백 혜 련 박 찬 대 백 승 주 서 영 교 서 형 수 성 일 종 설 훈 손 금 주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옥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원 식 오 신 환 오 영 훈 유 동 수 원 유 철 위성 곤 유기준 유 은 혜 윤 관 석 유 민 봉 유 성 엽 윤 상 직 유 종 필 유 호 중 유 후 덕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수 혁 이양수 이 원 욱 이 은 권 이용호 이 은 재 이정미 이 인 영 이재정 이 종 걸 이종구 이 종 명 이종배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학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인 재 근 장 병 완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성호 정세 균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최경화(평) 최도자 최 연 혜 최 운 열 추경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회

#### 기권 의원(2인)

곽대훈 민홍철

#### ○출석 의원(271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석 진 강 석 호 강 효 상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성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동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기선 김 두 관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무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훈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석기 김선 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 태 金成泰 김세연 김 수 민 김 영 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재 경 김 정 우 김용 태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종회 김종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미 현 아 김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대 출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홍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형 수 서 영 교 설 훈 손 금 주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신 상 진 신 동 근 신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어 기 구 양 승 조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세 정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워 혜 영 위성 곤 유기준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이 개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양수 이 수 혁 이 언 주 이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 혅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해 찬 이학재 이 헌 승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석 춘 장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정 동 영 정 갑 윤 정세균 정 성 호 정 양 석

김 영 호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진 태

김 태 흠

김 해 영

나 경 원

도 종 환

민 병 두

박 남 춘

박 범 계

박 순 자

박 용 진 박 주 민

박 찬 대

백 혜 련

성 일 종

송 기 헌

송 희 경

신 창 현

심 재 철

안 호 영

여 상 규

오 영 훈

원 유 철

유동수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영 일

윤 후 덕

이 만 희

이석현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장 우

이종걸

이 주 영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현 재

임이자

장 정 숙

전 혜 숙

정 병 국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유섭 정 인 화 정진석 정 춘 숙 정재호 정 종 섭 정태옥 제 윤 경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승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영 진 천 정 배 최도자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하태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의 락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 ○개의 시 재석 의원(168인)

강 병 워 강석 진 강석호 강 훈 식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동 철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희 김성원 金成泰 김수민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순 례 영 호 김 김 용 태 김 정 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노 웅 래 김 한 표 김 현 아 나 경 원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박 덕 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정 박 지 원 백 재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설 송 옥 주 성일종 소 병 훈 송 기 헌 송 희 경 신 동 근 신용 현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양 승 조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후 덕 윤 종 필 윤 호 중 이 만 희 이명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수혁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주 영 이 채 익 이철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전 혜 숙 장 석 춘 전 희 경 정 갑 윤 정세 균 정 유 섭 정성호 정 운 천 정 재 호 정 종 섭 정진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지 상 욱 진 선 미 최 교 일 진 영 최경환(평)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인호 추 미 애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회

#### ○속개 시 재석 의원(118인)

강 병 원 강석 진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두 관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병 욱 김민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수민 김 영 호 김 승 희 김 정 우 김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중 로 김 종 훈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문 희 상 박 덕 흠 박 남 춘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영 선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현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혜 백 승 주 련 서 영 교 소 병 훈 서 형 수 훈 성일종 설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종 필 윤 후 덕 윤 영 일 윤 호 중 이 상 돈 이 개호 이석현 이 수 혁 이 양수 이 완 영 이 원 욱 이재정 이종명 이 채 익 이철규 이 철 희 이 학 영 이 춘 석 이 해 찬 이 현 재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성호 정세균 정 재 호 정 진 석 제 윤 경 조 승 래 조 응 천 최경환(평)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정 애 황 주 홍 홍 영 표

#### ○산회 시 재석 의원(126인)

강 병 원 강석 진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석 기 김 삼 화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남 인 순	문 희 상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덕 흠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옥 주	송 희 경	신 동 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안 규 백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원 식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은 혜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은 재
이 재 정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혜 숙	전 희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재 호	정 진 석	제 윤 경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최경환(평)
최도자	최 운 열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영 표	황 주 홍		
a			

#### ○청가 의원(11인)

고 용 진 김 부 겸 박 명 재 변 재 일 신 경 민 신 보 라 유 승 희 전 현 희 조 훈 현 주 광 덕 채 이 배

####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김 곤 장 성 입 법 차 장 구 진 정 사 무 차 장 0] 인 용 의 사 영 국 장 권 진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0 낙 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 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상 곤 균 통 일 부 장 관 명 조 법 무 부 장 관 박 상 7]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도 종 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김	슨	경
고용노동부장관	김	영	주
여성가족부장관	정	현	백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종	학

####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1차관 임 성 남 행정안전부차관 균 심 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 현 수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김 상 조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 【보고사항】

####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오신환		
법제사법	오신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2. 21.
여성가족	신용현		
재난안전 대책 특별	오세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오세정		
외교통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2018.
보건복지	최도자		2. 22.
국토교통	이학재		
청년미래 특별	채이배	바른미래당	2018. 2. 23.
정무	김관영	바른미래당	
교육문화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8.
체육관광	이동섭	바른미래당	2. 27.
환경노동	김삼화	바른미래당	

####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주광덕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8. 2. 20.

####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사법개혁 특별	•	오신환	바른미래당	2018. 2. 26.

#### ○의안 제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홍의락·정성호·변재일·남인순· 진선미 · 유호중 · 김병관 · 문희상 · 신창현 · 민홍철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주호영·박명재·강석호·김현아· 김명연 · 성일종 · 김석기 · 이채익 · 김세연 · 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이상민·정성호·어기구·전재수· 노웅래 · 이철희 · 유성엽 · 강창일 · 오제세 · 이종걸 의원 발의)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전재수・유은혜・김병욱・오영훈・ 조승래 · 김민기 · 노웅래 · 이종걸 · 서형수 · 최인호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전재수・유은혜・김병욱・오영훈・ 조승래 · 김민기 · 노웅래 · 이종걸 · 서형수 · 최인호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노웅래·신창현·원혜영·박찬대· 백혜련 · 전재수 · 박선숙 · 박정 · 오영훈 · 이철희・김정우・소병훈・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김종민・강훈식・고용진・김두관・ 김상희 · 김철민 · 김한정 · 김현권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박정 · 박홍근 · 백재현 · 신창현 · 어기구 · 원혜영 · 위성곤 · 유승희 · 이용득 · 전현희 · 정재호 · 진선미 · 최운열 · 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김종민·강훈식·고용진·김두관· 김상희 · 김철민 · 김한정 · 김현권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박정 · 박홍근 · 백재현 · 신창현 · 어기구 · 원혜영 · 위성곤 · 유승희 · 이용득 · 전현희 · 정재호 · 진선미 · 최운열 · 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 원혜영 · 김정우 · 전재수 · 윤관석 · 박정 · 신창현 · 정춘숙 · 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박인숙·손금주·김세연·하태경· 유승민 · 김성원 · 김현아 · 김명연 · 유의동 · 유동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 원혜영 · 전재수 · 윤관석 · 박정 · 심재권 · 신창현ㆍ정춘숙ㆍ이재정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기동민·고용진·전현희·신창현· 이철희 · 김영호 · 인재근 · 원혜영 · 김정우 · 전재수 · 윤관석 · 박정 · 정춘숙 · 이재정 · 심재권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 김정우 · 전재수 · 윤관석 · 박정 · 신창현 · 정춘숙ㆍ이재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 원혜영 · 김정우 · 전재수 · 윤관석 · 박정 · 신창현 · 정춘숙 · 이재정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권미혁·윤관석·신창현·김영호· 원혜영 · 강훈식 · 윤소하 · 김정우 · 고용진 · 정춘숙·이철희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노웅래·신창현·백혜련·전재수· 박선숙·박정·오영훈·이철희·김정우· 김상희·소병훈·윤관석·고용진·김민기· 유은혜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김수민·이동섭·김중로·오세정· 김광수·황주홍·최경환(평)·이용호·권은희· 이찬열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윤한홍·최연혜·이명수·곽대훈· 강석진·김종석·정유섭·박성중·이종구· 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신창현·노웅래·유동수·이원욱· 박광온·전해철·기동민·어기구·이개호· 박경미·김철민·위성곤·이수혁·심재권 의원 발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주호영·박명재·강석호·김현아· 김명연·성일종·김석기·이채익·박덕흠· 이종배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주호영·박명재·강석호·김현아· 김명연·성일종·김석기·이채익·김세연· 박덕흠 의원 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김중로·황주홍·김삼화·신용현· 김수민·원유철·이종명·이철희·하태경· 이동섭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0. 김광수·조배숙·박지원·천정배· 윤영일·박주선·유성엽·장병완·김경진· 최경환(평)·김종회·정동영·유동수 의원 발의) 2월 21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1. 주광덕·성일종·이진복·김성원· 신보라·민경욱·윤재옥·이은재·박대출· 김선동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주광덕·성일종·이진복·김성원·

신보라 · 민경욱 · 윤재옥 · 이은재 · 박대출 · 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1. 金成泰·정병국·이찬열·정갑윤· 박맹우·원유철·조훈현·임이자·김성찬· 이은권·김경진 의원 발의)

2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김경협·기동민·김영호·김정우· 노웅래·박정·심재권·원혜영·윤관석· 이철희·정성호 의원 발의)

2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윤재옥·박성중·홍철호·민경욱· 김정재·유민봉·권석창·김한표·조훈현· 유재중 의원 발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윤재옥·박성중·홍철호·민경욱· 김정재·유민봉·권석창·주광덕·조훈현· 유재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박인숙·유승민·김세연·김성원· 하태경·김종회·권석창·이명수·정양석· 김용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1. 김영호·고용진·김정우·김종대· 김현권·노웅래·변재일·원혜영·유동수· 이철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임이자·문진국·주광덕·원유철· 이헌승 · 윤종필 · 장석춘 · 정유섭 · 김상훈 · 김한표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임이자・송희경・함진규・윤영일・ 김명연・金成泰・원유철・문진국・윤종필・ 김상훈 · 김한표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1. 박성중·박덕흠·홍문표·이은재· 이종구・곽대훈・홍철호・김학용・윤영석・ 장제원 · 이진복 · 정태옥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종훈・ 김상희 · 이원욱 · 백혜련 · 서형수 · 기동민 · 박경미 · 김두관 · 조승래 · 이수혁 · 위성곤 · 양승조 의원 발의)

2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2. 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김종회・정인화・황주홍・김광수・ 박주현 · 신용현 · 김중로 · 김철민 · 정동영 · 최경환(평) · 이찬열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제윤경・민홍철・김영호・이개호・ 윤관석 · 박찬대 · 심기준 · 정성호 · 안호영 · 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8. 2. 22. 정부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장정숙·정동영·황주홍·박지원· 조배숙 · 김경진 · 천정배 · 김종회 · 이용주 · 유성엽·장병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김도읍·정태옥·민경욱·강효상· 여상규 · 성일종 · 김태흠 · 이헌승 · 이채익 · 추경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박용진·민병두·이학영·김해영· 박찬대 · 강병원 · 김관영 · 김종민 · 이종절 · 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박정·조승래·전해철·정재호· 서영교·소병훈·유동수·이원욱·김상희· 박완주 · 박찬대 · 이용득 · 어기구 · 김철민 · 전현희 · 강병원 · 김한정 · 송기헌 · 김성수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박정·조승래·전해철·정재호· 서영교·소병훈·유동수·이원욱·김상희· 박완주 · 박찬대 · 기동민 · 이용득 · 어기구 · 김철민·전현희·김한정·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이명수·김석기·홍문표·윤한홍· 김재원 · 박인숙 · 유민봉 · 김태흠 · 김성찬 · 경대수 의원 발의)

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원유철・김상훈・서청원・金成泰・ 김기선 · 임이자 · 정병국 · 박덕흠 · 박명재 · 안상수·김중로 의원 발의)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노웅래·송기헌·주승용·신창현· 최인호 · 김영호 · 정동영 · 유은혜 · 민홍철 · 김정우 · 안민석 의원 발의)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김상훈·강석진·성일종·임이자·

김정재 · 송석준 · 원유철 · 곽대훈 · 주호영 ·

유재중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김상훈·강석진·성일종·임이자· 김정재·송석준·원유철·곽대훈·주호영· 유재중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김상훈·강석진·성일종·임이자· 김정재·송석준·원유철·곽대훈·주호영· 유재중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김상훈·강석진·임이자·김정재· 송석준·원유철·곽대훈·주호영·추경호· 유재중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이언주·김동철·권은희·김관영·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 유의동·이동섭·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2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신보라·김성원·이철규·주광덕· 전희경·권석창·김정재·정유섭·이양수· 홍문표 의원 발의)

2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2. 이명수·박순자·강석호·홍철호· 김상훈·김성찬·유민봉·김재원·경대수· 안상수 의원 발의)

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2. 정춘숙·금대섭·김영호·이철희· 신창현·최도자·김삼화·강훈식·소병훈· 김정우·김성수 의원 발의)

2월 2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구조 관련 감사원에

#### 대한 감사요구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 2018. 2. 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2. 22.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2. 22.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조경태·나경원·김승희·최교일· 박맹우·송석준·이종명·정병국·박순자· 문진국·정갑윤 의원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금태섭·윤호중·백혜련·변재일· 이학영·정춘숙·이철희·윤관석·전혜숙· 서형수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금태섭·윤호중·백혜련·변재일· 이학영·정춘숙·이철희·윤관석·전혜숙· 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수민·최도자·김삼화·오세정· 정병국·황주홍·이찬열·권은희·김경진· 이동섭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중로·이동섭·최도자·오세정· 황주홍·김삼화·김수민·이철희·권은희· 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8건 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석기·정갑윤·김승희·송희경・ 함진규·조훈현·유기준·김현아·이명수・ 김광림 의원 발의)

2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김석기·정갑윤·신보라·송희경· 조훈현·박인숙·박명재·이명수·김승희· 김성찬·김광림 의원 발의)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금태섭·윤호중·백혜련·변재일· 정춘숙·이철희·윤관석·권미혁·박경미· 서형수 의원 발의)

2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정동영·황주홍·김중로·권은희· 심상정·전혜숙·김경진·문희상·장정숙· 김광수·이찬열·정성호·최경환(평)·박주현· 박지원·정인화 의원 발의)

2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성찬·金成泰·박덕흠·이명수・ 김석기・이주영·송희경·홍문표·박맹우· 성일종 의원 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박완주·노웅래·장정숙·이철희· 신창현·김정우·원혜영·박찬대·송옥주· 윤관석·전재수·백혜련·김영호·김민기· 남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김해영·이찬열·박용진·박광온· 박홍근·최인호·전재수·이학영·서영교· 양승조 의원 발의)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최도자·이동섭·김수민·김관영· 박찬대·김중로·천정배·주승용·조배숙· 신용현·손금주·오세정·이찬열 의원 발의) 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전혜숙·고용진·김철민·박완주· 신창현·금태섭·장정숙·김영진·이찬열· 천정배·권칠승 의원 발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정동영·황주홍·김중로·권은희· 심상정·전혜숙·김경진·문희상·장정숙· 김광수·이찬열·정성호·최경환(평)·박주현· 박지원·정인화 의원 발의)

# 이상 2건 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3. 정춘숙·김영호·이철희·신창현· 최도자·김삼화·강훈식·소병훈·김정우· 김성수 의원 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송기헌·노웅래·문희상·윤후덕·

유동수·김성수·김철민·김영호·강병원· 박정·박경미·권미혁·이원욱·어기구· 김병기·이훈·신창현·정춘숙·정성호· 서영교·유은혜·송옥주·소병훈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대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3. 금태섭·윤호중·백혜련·변재일· 이학영·정춘숙·이철희·윤관석·권미혁· 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8. 2. 23.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정동영·심상정·김중로·장정숙· 김광수·이찬열·정성호·박주현·천정배· 박지원·정인화 의원 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정동영·심상정·김중로·장정숙·김광수·이찬열·박주현·박지원·정인화·천정배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오신환·김동철·권은희·김관영·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최경환(평)·김관영·김광수·김종회· 김철민·박선숙·안규백·유동수·윤영일· 이용호·정동영·주승용·최도자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오신환·김동철·권은희·김관영·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세정·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오세정·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오세정·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오세정·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노웅래·장정숙·이개호·조승래· 김영호·박찬대·김정우·이철희·오영훈· 신창현·윤관석·이수혁·김종대·유동수· 박정·송옥주·심기준·유은혜·고용진· 남인순·민홍철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이동섭·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 유의동·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 윤소하 · 심상정 · 박찬대 · 박선숙 · 정성호 · 전재수 의원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워 대표발의)

(2018. 2. 26.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학재 ·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 윤관석 · 서영교 · 박정 · 이용득 · 안규백 · 백재현 · 이석현 의원 발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 윤관석 · 이용득 · 안규백 · 이학영 · 이석현 · 박경미 의원 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 유관석 · 이용득 · 안규백 · 이학영 · 이석현 · 박경미 의원 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윤관석· 이용득 · 안규백 · 이석현 · 김상희 · 남인순 · 박경미 의원 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 윤관석·서영교·박정·이용득·안규백· 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윤관석· 이용득 · 안규백 · 이석현 · 김상희 · 남인순 · 박경미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유은혜・ 윤관석 · 이용득 · 안규백 · 이학영 · 이석현 · 박경미 의원 발의)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윤관석· 이용득 · 안규백 · 이석현 · 김상희 · 남인순 · 박경미 의원 발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설훈·전혜숙·안호영·윤관석· 이용득 · 안규백 · 이석현 · 김상희 · 남인순 · 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9건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조경태·장석춘·김현아·심재철· 김성태・박맹우・송석준・김승희・권성동・ 이종명 · 정갑윤 의원 발의)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최경환(평)·김관영·김경진·김종회· 박선숙 · 유동수 · 윤영일 · 정동영 · 주승용 · 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 **국립철도박물관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신창현·남인순·서영교·권미혁· 문희상·유승희·송기헌·노웅래·윤후덕· 심재권 의원 발의)

2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박경미·양승조·정춘숙·노웅래· 신창현·민홍철·송기헌·김성수·김민기· 설훈 의원 발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김삼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 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김삼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 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이상 3건 2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김동철·지상욱·이동섭·김삼화· 이찬열·이언주·김중로·권은희·오세정· 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2월 27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6. 김동철·지상욱·이동섭·김삼화· 이찬열·이언주·김중로·권은희·오세정· 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2월 28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2.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민경욱·정태옥·성일종·이종배· 정갑윤·김명연·윤재옥·송희경·서청원· 김도읍 의원 발의)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남인순·이철희·원혜영·홍의락· 윤관석·신창현·김성수·송옥주·심기준· 정성호·박찬대·설훈 의원 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김삼화·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 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남인순·이철희·원혜영·홍의락· 윤관석·신창현·송옥주·심기준·정성호· 박찬대·설훈 의원 발의)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2018. 2. 27. 김민기·이인영·김상희·신동근· 신창현·전재수·정성호·조승래·이춘석· 전해철·손혜원·설훈·김병욱 의원 발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정동영·장정숙·김부겸·이찬열· 박주현·유성엽·조배숙·최경환(평)·김중로· 천정배·김삼화·박지원·정인화·오세정 의원 발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전해철·정재호·백혜련·박정· 박남춘·최인호·권칠승·이학영·박찬대· 백재현 의원 발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조배숙·김경진·김광수·김종회· 남인순·윤영일·이찬열·장병완·정동영· 정성호·천정배·최경환(평)·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원유철·윤영석·임이자·김한표· 나경원 · 정병국 · 조훈현 · 서청원 · 김순례 · 박맹우 의원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이태규·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김관영·정병국·박주현·주승용· 박용진 · 이동섭 · 이찬열 · 김중로 · 김수민 · 권은희·오세정·이태규 의원 발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박맹우・원유철・정갑윤・金成泰・ 박덕흠 · 윤영석 · 백승주 · 김성찬 · 김도읍 · 유기준 의원 발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박맹우・원유철・정갑윤・金成泰・ 박덕흠 • 윤영석 • 백승주 • 김승희 • 김재경 • 김성찬 · 김도읍 · 유기준 의원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강창일·인재근·신창현·남인순· 주승용 · 백재현 · 정재호 · 정동영 · 소병훈 · 김영호 의원 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김승희·이철규·김성원·곽대훈· 김석기 · 이만희 · 박성중 · 윤재옥 · 안상수 · 이종구・金成泰 의원 발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이태규·권은희·김관영·김동철·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학재 ·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김관영·정병국·박주현·주승용· 박용진 · 이동섭 · 이찬열 · 김중로 · 김수민 · 권은희·오세정·이태규 의원 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윤한홍·박성중·김규환·문진국· 권석창 · 정갑윤 · 김석기 · 최연혜 · 이명수 · 곽대훈 의원 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김관영·정병국·주승용·박용진· 이동섭・이찬열・김중로・김수민・권은희・ 오세정 · 이태규 의원 발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 · 김영진 · 심재권 · 민홍철 · 어기구 · 김정우 의원 발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권은희·김관영·김수민·이찬열· 이동섭・채이배・최도자・이언주・신용현・

김동철 의원 발의)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윤경·윤관석·유동수·민홍철· 신창현·정성호·박찬대·김정우·노웅래· 김병욱 의원 발의)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김영진·심재권·민홍철·어기구· 김정우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김영진·심재권·민홍철·어기구· 김정우 의원 발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황희·신창현·박재호·이원욱· 안규백·김영진·심재권·민홍철·어기구· 김정우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7. 제윤경·윤관석·유동수·민홍철· 신창현·정성호·박찬대·김정우·노웅래· 김병욱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김관영·권은희·김동철·김삼화· 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박주선· 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언주·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3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8. 2. 2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8. 2. 28. 정무위원장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018. 2. 28.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2. 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2. 28. 국방위원장 제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8. 2.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8. 2. 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8. 2.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아동수당법안(대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18. 2. 2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8. 2. 2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8. 2. 2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8. 2. 28.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국회사무총장(김성곤) 임명승인안

(2018. 2. 28. 의장 제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018. 2. 28. 의장 제의)

#### ○의안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7. 8. 1. 조승래·이해찬·송옥주·정춘숙· 백재현·추미애·이용득·김정우·유은혜· 김민기 · 김병욱 · 고용진 · 안민석 · 윤관석 · 김해영 · 권칠승 · 박경미 · 홍의락 · 오영훈 · 박정·박남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2. 3. 여상규·경대수·김재경·이주영· 오신환 · 정운천 · 이채익 · 정갑윤 · 이은재 · 홍일표 의원 발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7. 6. 29. 김진태·정갑윤·이현재·윤상직· 송희경 · 여상규 · 엄용수 · 강효상 · 유민봉 · 나경원·김성태 의원 발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7. 7. 4. 최연혜·조경태·곽대훈·박대출· 정운천 · 김정재 · 권석창 · 김도읍 · 이명수 · 이채익 · 경대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9. 최명길·최인호·윤호중·박용진· 강병원 · 이원욱 · 유승희 · 김영진 · 진선미 · 이훈 · 고용진 · 김두관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1. 2. 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 안규백 · 신경민 · 이춘석 · 김해영 · 전혜숙 · 박주민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8. 12. 서영교·김경진·박용진·박홍근· 박재호 · 김삼화 · 정성호 · 김해영 · 안규백 · 김정우 · 신창현 · 황주홍 · 박남춘 · 박주민 · 전현희 · 제윤경 · 유동수 · 이용주 · 진선미 · 박광온·김관영·조정식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 박주민·백혜련·김정우·위성곤· 박재호 · 윤관석 · 정성호 · 민병두 · 신경민 · 박남춘 · 김영춘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7. 2. 15. 박범계·문미옥·윤소하·진선미· 김성수 · 박광온 · 도종환 · 이원욱 · 박홍근 · 이춘석·김현미·윤호중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0.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 신경민 · 이학영 · 이찬열 · 이춘석 · 김영주 · 김해영 의원 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8. 18. 정부 제출)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8. 정우택·김광림·신상진·최연혜· 이진복 · 박순자 · 김성원 · 성일종 · 윤종필 · 장석춘 · 정용기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7. 3. 전해철·서영교·김철민·황희· 김성수·권미혁·김태년·금태섭·기동민· 강훈식·박주민·이용득·심기준 의원 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8. 2. 박찬대·김병욱·장정숙·표창원· 윤관석·박정·신창현·서형수·소병훈· 김정우·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정무위원장 보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7. 8. 신용현·권은희·김광수·김삼화·김중로·손금주·유성엽·이동섭·장정숙·채이배·최경환(국) 의원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어기구·송기헌·문희상·유승희· 이용득·위성곤·신창현·유동수·조승래· 제윤경·민병두·표창원·김종민·김경협· 최운열·소병훈 의원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 강병원·강훈식·김한정·한정애· 신창현·김병기·권미혁·서형수·이수혁· 윤관석·민병두·제윤경·문희상·최운열· 이용득·정재호·김종민·박정·송옥주· 최인호·김철민·박영선·유승희·송기헌· 서영교·노웅래·표창원·설훈 의원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 이찬열·위성곤·이언주·신용현· 윤호중·주승용·황주홍·김해영·김현아· 손금주·전혜숙·박주현·홍의락·곽상도· 정성호·천정배·이동섭·김종회·김관영· 유민봉·윤영일·김수민·고용진·김병욱· 김민기·박용진·이종걸·이원욱·박광온· 안규백·이용호·정운천·홍익표·김병관· 오세정·박홍근·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 이원욱·남인순·김상희·윤영일·한정애· 이재정 의원 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광수·정인화·김종회·김경진· 김관영·정동영·이용호·박주현·이동섭· 김중로·황주홍·김삼화·신용현·주승용· 유성엽·박주선·조배숙·이상돈·김성식· 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4. 신창현·김두관·문희상·김종민· 김철민·오제세·심기준·신경민·위성곤· 서형수·권미혁·유동수·강훈식·황희 의원 발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4. 전재수·유은혜·노웅래·김민기· 조승래·서형수·정재호·박재호·오영훈· 김해영·최인호·이종걸·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이철희·기동민·김병기·김병욱·김성수·김종대·노웅래·박남춘·박용진· 박정·서영교·소병훈·신동근·안규백· 위성곤·윤관석·이동섭·이상돈·이종걸· 이해찬·인재근·채이배·추혜선·한정애· 홍의락·황주홍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하태경·권은희·김관영·손금주· 오신환·이언주·이찬열·이혜훈·정병국· 정운천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김동철·박준영·정인화·윤영일· 최운열·김관영·천정배·최도자·이동섭· 김광수 · 이용주 · 송기석 · 박선숙 · 오제세 · 박지원 · 조배숙 · 김한정 · 채이배 · 김경진 · 이태규 · 박영선 · 이찬열 · 김삼화 · 오세정 · 김종회 · 김수민 · 최경환(국) · 최명길 · 김성식 · 신용현ㆍ강창일ㆍ김상희ㆍ노웅래ㆍ장정숙ㆍ 권은희 · 손금주 · 정동영 · 이상돈 · 황주홍 · 김중로 · 추혜선 · 김종민 · 심재권 · 유성엽 · 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 5 ·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최경환(국)·강훈식·권미혁·권은희·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병욱 · 김삼화 · 김성식 · 김수민 · 김종대 · 김종회 · 김중로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노회찬 · 민병두 · 민홍철 · 박광온 · 박선숙 · 박영선 · 박용진 · 박주민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박지원·박홍근·서영교·설훈·소병훈· 손금주·송기석·송옥주·신경민·신용현· 안민석 · 오세정 · 오영훈 · 오제세 · 원혜영 · 위성곤・유성엽・유은혜・윤관석・윤소하・ 윤영일 · 윤후덕 · 이훈 · 이동섭 · 이상돈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주 · 이용호 · 이원욱 · 이인영 · 이찬열 · 이태규 · 이해찬 · 인재근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양석 · 정인화・정춘숙・조배숙・조승래・주승용・ 채이배 · 천정배 · 최도자 · 최명길 · 최인호 · 추혜선·하태경·황희·황주홍 의원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개호・강병원・강창일・강훈식・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민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의원 발의)

#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 김동철·천정배·이동섭·박정· 박준영 · 윤영일 · 송기석 · 윤소하 · 위성곤 · 최경환(국) · 주승용 · 원혜영 · 이원욱 · 박홍근 · 김경진 · 김중로 · 박주선 · 장병완 · 이용주 · 정인화 · 유성엽 의원 발의)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7. 8. 28. 정부 제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 이동섭 · 최도자 · 전혜숙 · 김경진 · 김중로 · 김종회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국방위원장 보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8. 1. 4. 진선미·소병훈·김영호·박찬대· 김정우・남인순・윤관석・오제세・정성호・ 신창현 · 김성수 · 박정 · 추미애 · 민홍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 퓨발의)

(2017. 3. 6. 박지원·김경진·김관영·김광수·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손금주 · 송기석 · 유성엽 · 윤영일 · 이군현 · 이동섭 · 이용주・이용호・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윤상현·권성동·강석호·김선동·

김재경·김정재·나경원·민경욱·박성중· 신동근·신창현·안상수·유민봉·윤상직· 윤재옥·이명수·이용호·장제원·정용기· 정진석·주광덕·주호영·홍일표·홍철호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7. 위성곤·신창현·이찬열·윤영일·이학영·황주홍·홍문표·김현권·정재호· 변재일·이수혁·송기헌·유승희·심기준· 송옥주·이용득·박영선·강병원·홍영표· 강창일·오영훈·김상희·심재권·이원욱· 소병훈·기동민·김두관·설훈 의원 발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7. 9. 26. 김영진·김영호·백혜련·서영교· 소병훈·이원욱·인재근·전혜숙·한정애· 황희 의원 발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3. 진선미·이원욱·김성수·박주민· 박재호·유동수·소병훈·김현권·김철민· 김정우·최도자·민홍철·금태섭·권미혁· 정성호·손혜원·정인화 의원 발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0. 20. 정부 제출)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7. 박남춘 · 윤후덕 · 황희 · 박찬대 · 조정식 · 신창현 · 김종회 · 진선미 · 이재정 · 심재권 · 인재근 · 전해철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3. 김삼화·김광수·김관영·조배숙· 신용현·박주선·유성엽·정동영·장정숙· 채이배·황주홍·김경진·추미애·최도자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찬열·위성곤·윤호중·박영선· 안규백·신경민·김관영·최도자·김해영· 노웅래·설훈·김동철·박정·원혜영· 이춘석·주승용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9. 23. 정인화·윤영일·진선미·황주홍· 이동섭·송기석·주승용·김철민·이완영· 최도자·김삼화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7. 김삼화·김수민·김종회·장정숙· 김중로·이상돈·윤영일·최경환(국)·이동섭· 이용호·김관영·이용주·박지원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7. 장정숙·노웅래·전혜숙·권은희· 이동섭·남인순·박찬대·최경환(국)·이훈· 이개호 의원 발의)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2017. 4. 27. 정부 제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9. 김영춘·박정·최인호·김해영· 강훈식·이개호·김철민·서형수·이원욱· 윤관석·전재수·소병훈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8. 30. 박남춘·한정애·윤소하·김영호· 전해철·김영진·진선미·김두관·박명재· 오영훈·소병훈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2. 박찬우·이은권·이명수·박덕흠· 민홍철·안규백·이우현·박맹우·박명재· 김용태 의원 발의)

####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2017. 4. 27. 정부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 진선미·신창현·심기준·서영교· 박남춘·김영호·정성호·최인호·홍의락· 문희상·한정애·강병원·이재정·백재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0. 이학재·정태옥·정갑윤·김종회· 함진규·추경호·박명재·김종태·주호영· 주광덕·신보라·신상진 의원 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7. 29.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 양승조·김정우·정춘숙·전혜숙· 박남춘·백혜련·윤소하·김병욱·김병기· 권미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28. 주호영·박인숙·이종배·박명재· 이학재·김현아·곽대훈·이채익·김성태· 함진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31. 송희경·김석기·이석현·정병국· 정갑윤·유의동·성일종·노웅래·최연혜· 권미혁·박순자·김관영·황주홍·강석진· 윤종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0. 김영진·기동민·김정우·백혜련· 우원식·이원욱·이종걸·인재근·장정숙· 최명길·황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13. 김정우·김영호·김상희·김영진· 문미옥·박남춘·신경민·이찬열·소병훈· 표창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2. 7. 장정숙·김영호·남인순·권은희· 김정우·윤관석·김영진·김민기·전혜숙· 박찬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민홍철·서형수·최인호·김관영· 이원욱·변재일·이종걸·김경수·조정식· 이개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7. 송옥주·서형수·조승래·안규백· 권칠승·이원욱·김성수·유은혜·박주민· 노웅래·강훈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8. 김정재·김도읍·곽대훈·김명연·

정갑윤·성일종·정진석·김석기·조훈현· 윤재옥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8. 송옥주·서형수·안규백·권칠승· 이원욱·김성수·유은혜·박주민·노웅래· 강훈식·조승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6. 9. 박경미·김병욱·이해찬·노웅래· 안민석·권미혁·고용진·김민기·정성호· 도종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9. 박남춘·서영교·한정애·윤소하· 안규백·강창일·김정우·윤관석·김현권· 김영호·전해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0. 노웅래·강창일·오영훈·정성호· 안규백·김병욱·김민기·박정·최명길· 서형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5. 이완영·유민봉·윤재옥·김승희· 함진규·송희경·권석창·김상훈·강석진· 정갑윤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8. 31. 황희·박재호·유동수·임종성· 정재호·김영호·최인호·권칠승·윤관석· 홍의락·김정우·노웅래·홍익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7. 황주홍·이찬열·김태흠·김광수· 김종회·전해철·김경진·송옥주·정재호· 박주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0. 신창현·박정·김종대·박주민· 윤관석·김영호·유동수·민병두·어기구· 심재권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4. 박영선·변재일·윤관석·이춘석·

송영길·조승래·김성수·문희상·박정· 기동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4. 김영진·김민기·김영호·김정우· 서영교·설훈·이원욱·인재근·전혜숙· 제윤경·조승래 의원 발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 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 문미옥 의원 발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7. 19. 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 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 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2. 박완수·김성원·주호영·김정훈·김중로·홍철호·김재원·유동수·민병두·함진규·여상규·김진태·박맹우·김선동·박덕흠·이종명·이군현·김학용·김용태·유기준·김무성·조경태·이찬열·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6. 김민기·조승래·전재수·김영진· 노웅래·유동수·민홍철·신창현·정성호· 윤관석·김상희·손혜원·박정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 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 박주선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6. 12. 9. 정부 제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6. 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 유성엽·김종회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22. 정부 제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박맹우·엄용수·이채익·김승희· 박완수·정갑윤·김태흠·김종대·성일종· 권석창·배덕광·조경대·이만희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박남춘·서영교·윤소하·안규백· 강창일·김정우·윤관석·김현권·김영호·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4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0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 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 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2. 박완주·박용진·박재호·위성곤· 김종민·남인순·김정우·유은혜·이원욱· 전혜숙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5. 홍의락·김상희·서영교·우원식· 변재일·박정·박재호·한정애·표창원· 이정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1. 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 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 권미혁·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1. 장제원·조배숙·정성호·강길부· 이춘석·김성찬·김정우·박덕흠·이주영· 주광덕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8. 이태규·이찬열·이동섭·조배숙· 김광수·천정배·신용현·김경진·최경환(국)· 김중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 주승용·최도자·조배숙·윤영일· 김경진 · 박주현 · 강창일 · 이동섭 · 김중로 · 김해영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9. 8. 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중로ㆍ 김삼화 · 김경진 · 김종회 · 강창일 · 박준영 · 천정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8. 기동민·변재일·박영선·강훈식· 강병원 · 이재정 · 안규백 · 김상희 · 정춘숙 · 민병두 · 이철희 · 전해철 · 전혜숙 · 인재근 · 고용진·전현희·양승조·백재현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9. 주호영·정병국·정양석·하태경· 김현아 · 이종구 · 이학재 · 황영철 · 김세연 · 김영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27. 정병국·김세연·김용태·김현아· 원유철 · 이학재 · 정운천 · 주호영 · 하태경 · 홍문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2017. 11. 8. 김상희·김민기·박홍근·기동민· 정성호・윤호중・정춘숙・전혜숙・인재근・ 윤소하·양승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7. 김재원·이명수·이은재·정태옥· 박덕흠 · 함진규 · 나경원 · 박명재 · 윤영석 · 이현재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8. 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민홍철ㆍ 이개호 · 강창일 · 정인화 · 윤영일 · 백재현 · 이채익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5. 이만희·홍문표·박덕흠·민경욱· 이양수・홍문종・조훈현・김석기・이우현・ 김도읍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9. 김철민·김현권·위성곤·소병훈· 송기헌 · 윤영일 · 임종성 · 윤후덕 · 강훈식 · 김종회 의원 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10. 12. 정부 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1. 9. 전혜숙·윤관석·권미혁·김해영· 강병원 · 서영교 · 김상희 · 도종환 · 박완주 · 박광온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퓨발의)

(2016. 12. 29. 김도읍·김현아·곽대훈·이현재· 유기준 · 김성원 · 이명수 · 정태옥 · 성일종 · 정진석 의원 발의)

(이상 1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7. 9. 15. 이훈·김정우·위성곤·표창원· 윤관석 · 박정 · 전해철 · 박재호 · 신경민 · 권미혁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3. 10. 김도읍 • 이만희 • 이헌승 • 정태옥 • 지상욱 · 이명수 ·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 이채익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 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 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6. 11. 14. 장병완·윤영일·김경진·이개호· 손금주・김철민・주승용・유동수・이채익・ 김동철 · 김수민 · 박주선 · 이동섭 · 송기석 · 최경환(국) · 권은희 · 인재근 · 천정배 · 조배숙 · 홍익표·김규환·김성원 의원 발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12. 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 정책 촉구 결의안

(2016. 6. 21. 김영춘·강창일·강훈식·고용진·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회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회찬 · 도종환 · 문미옥 · 민홍철 · 박경미·박남춘·박범계·박선숙·박영선·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영길· 송옥주·신경민·신창현·심재권·안규백· 안민석·안호영·양승조·오영훈·오제세·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성엽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소하 · 윤종오 · 윤후덕 · 이개호 · 이동섭 · 이석현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주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찬열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인재근 · 임종성 · 장병완 · 전재수 · 전혜숙 · 정동영 · 정성호・정춘숙・제윤경・조정식・주승용・ 진선미 · 최도자 · 최인호 · 추혜선 · 표창원 · 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2016. 9. 27. 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2017. 7. 18. 정우택·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 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 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 김성태·金成泰·김순례·김승희·김재경· 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 김대흠·김학용·김한표·나경원·문진국· 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 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찬우·배덕광· 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 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 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 유재중·윤상직·윤상현·이만희·이명수· 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 이장우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용기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최경환(한)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정운천 의원 발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3. 16. 송옥주·강병원·김병욱·김삼화· 김수민·민병두·박재호·박정·박홍근· 서형수·신창현·안규백·어기구·유승희· 윤관석·이용득·이정미·임종성·조정식·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박찬우·김선동·김성찬·김용태· 김태흠·박덕흠·박성중·유민봉·이명수· 이은권 의원 발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김경수·장병완·홍익표·표창원· 강창일·유동수·서영교·박완주·어기구· 민병두·송기헌·신창현·문희상·김상희· 황희·박재호·김종민·김두관·안호영· 강훈식·이수혁·유승희·백재현·박남춘· 위성곤·이개호·김병기·오영훈·강병원· 윤관석·박정·송옥주·이훈·최인호· 최운열·제윤경·김병욱·김철민·소병훈· 김영호·조승래·손혜원·심기준·설훈· 전현희 의원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8. 7. 홍의락·이개호·변재일·이용득· 권칠승·윤호중·김병관·김정우·오제세· 이원욱·김현권·박경미·조정식 의원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신보라·문진국·윤종필·윤한홍· 박덕흠·경대수·김성찬·김종석·김선동· 이철규 의원 발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30. 정부 제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 발의)

(2017. 9. 4. 이훈·송기헌·홍익표·박재호· 박정·조배숙·윤한홍·이용득·문희상· 어기구・김종민・설훈・조승래・소병훈・ 김철민 · 신창현 · 김경헙 · 최운열 · 박광온 · 김병관 의원 발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7. 9. 6. 어기구·유승희·정재호·조승래· 김한정 · 송기헌 · 유동수 · 고용진 · 이훈 · 노웅래·백재현 의원 발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박재호·어기구·김해영·최인호· 박정 · 전재수 · 서형수 · 김정우 · 안민석 · 최운열 · 이훈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워 대표발의)

(2017. 12. 27. 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 정춘숙・권미혁・윤관석・윤소하・송옥주・ 위성곤 · 전혜숙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6. 6. 3. 양승조 · 오제세 · 박영선 · 김현미 · 심재권 · 이재정 · 김병욱 · 정재호 · 원혜영 · 신창현 의원 발의)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7. 박광온·이학영·권칠승·박경미· 박정 · 박홍근 · 전해철 · 윤후덕 · 유동수 · 김상희 · 이춘석 · 김부겸 · 박찬대 · 김진표 · 문미옥 · 정성호 · 김종민 · 김두관 · 김해영 · 박주민·박주현·홍의락·이찬열·민병두· 신경민 · 김정우 · 설훈 · 제윤경 · 조승래 · 인재근 · 송옥주 · 원혜영 · 최명길 · 박재호 · 김영진 · 김현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8. 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 김세연 · 송희경 · 이군현 · 이철우 · 이현재 · 이명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 11. 김광수·정인화·조배숙·김종회· 장정숙 · 권은희 · 정동영 · 이동섭 · 황주홍 · 김삼화 의원 발의)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김부겸·박정·노웅래·서영교· 정성호 · 윤관석 · 김종민 · 위성곤 · 인재근 · 이원욱 · 전재수 · 권칠승 · 김민기 · 김영춘 · 김정우・소병훈・김철민・유은혜・김상희・ 박홍근·홍의락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5. 김승희·박덕흠·김상훈·안상수· 윤영석·배덕광·김재원·이명수·최연혜· 임이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박의)

(2017. 6. 12.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 김종대 · 심상정 · 박남춘 · 김정우 · 양승조 · 인재근 · 서영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9. 전혜숙·정재호·박홍근·이찬열· 박재호 · 김영진 · 정춘숙 · 안규백 · 기동민 · 양승조 의원 발의)

#### 아동수당법안

(2017. 9. 28. 정부 제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 변재일 · 김상희 · 이학영 · 권미혁 · 양승조 · 이찬열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0. 전혜숙·안규백·이찬열·윤후덕· 임종성 · 윤관석 · 박홍근 · 서영교 · 진선미 · 이훈 · 박경미 · 박정 · 정성호 · 송기헌 · 김종민 · 박주민 · 한정애 · 강훈식 · 박영선 · 위성곤 · 신창현 · 김병기 · 박찬대 · 이석현 · 유동수 · 박재호 · 백혜련 · 황희 · 김영호 · 정재호·설훈·김병욱·소병훈·김철민· 안민석·노웅래·기동민·이철희·권미혁· 인재근·김경협·홍익표·김상희·이춘석· 이원욱·원혜영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6. 7. 6. 오제세·신경민·어기구·신창현· 윤후덕·박남춘·민홍철·전혜숙·박정· 김종민·김경수·김상희·황주홍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3. 김광수·조배숙·장정숙·정동영· 박선숙·김관영·박주현·이동섭·정인화· 이용주·김경진·이상돈·김중로·김삼화· 오세정·김종회·이태규·김수민·권은희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2. 김승희·강석진·김상훈·엄용수· 이완영·박덕흠·윤영석·이현재·안상수· 이은권·조경태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9. 윤소하·양승조·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김상희· 윤종오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 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 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 김수민 의원 발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9. 28. 정부 제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25. 김상희·정춘숙·위성곤·이찬열· 윤소하·홍의락·황주홍·서영교·박남춘· 전혜숙·인재근·이언주·권미혁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1. 31. 남인순·장정숙·김종훈·유은혜· 이재정·김삼화·강창일·윤소하·박주민· 이학영·박남춘·박정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7. 7. 6. 오제세·김종민·박정·김철민· 신창현·김해영·정성호·조배숙·윤관석· 추혜선·민홍철 의원 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9. 28. 정부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0. 23. 전혜숙·정재호·김영진·이원욱· 권미혁·인재근·남인순·기동민·김상희· 양승조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1. 양승조·김정우·신창현·인재근· 전혜숙·안호영·이용주·김해영·이학영· 김상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박인숙·유승민·정성호·이태규· 나경원·김성원·김성태·이명수·이종구· 김석기·김용태·이군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이찬열·전혜숙·황주홍·조배숙· 이동섭·박주현·윤호중·박정·박준영· 위성곤·임종성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7. 26. 정춘숙·박정·신경민·민홍철· 박주민·한정애·최경환(국)·인재근·윤소하· 신창현·정성호·안민석·손금주·소병훈· 홍의락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0. 심재권·유승희·윤관석·이수혁· 김경수·유동수·금태섭·서영교·송기헌· 임종성·박정·이용득·문희상·노웅래· 김정우·추미애·김두관·민병두·위성곤· 권미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1. 위성곤·이개호·표창원·정인화· 황주홍·윤영일·신창현·이양수·조배숙· 홍문표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6. 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 김해영 · 인재근 · 안호영 · 전혜숙 · 이용주 · 이학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남인순·권미혁·신창현·김정우· 송옥주·박정·정춘숙·민홍철·한정애· 이종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1. 최도자·천정배·심기준·김경진· 이동섭 · 김수민 · 이용주 · 박주현 · 전혜숙 · 정동영・김관영・하태경・주승용・채이배 의원 발의)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1. 9. 정부 제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13. 정부 제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12. 13. 남인순·안규백·김종대·서형수· 박남춘 · 전혜숙 · 이학영 · 위성곤 · 장정숙 · 윤후덕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6. 권미혁·정춘숙·최도자·서영교· 김상희 · 한정애 · 안규백 · 신창현 · 송옥주 · 홍영표 · 전혜숙 · 이철희 · 양승조 · 인재근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인재근·소병훈·권미혁·김영진· 김상희 · 유은혜 · 기동민 · 우원식 · 문미옥 · 이인영 · 남인순 · 강창일 · 설훈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3. 27. 박인숙·장제원·한선교·신상진· 김성원 · 최도자 · 이현재 · 이종구 · 이군현 · 김세연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 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 정동영 · 서영교 · 채이배 · 김삼화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22. 김승희·안상수·김상훈·윤영석· 박덕흠 · 이명수 · 김상희 · 이완영 · 김종회 · 이은권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7. 7. 20. 이정현·이명수·문진국·정병국·

이종명・이철규・김상훈・정갑윤・이진복・ 김광림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남인순 · 이학영 · 이원욱 · 김병기 · 신창현 · 윤호중 · 정춘숙 · 김해영 · 김현권 · 백혜련 의원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21. 권미혁·인재근·김영호·기동민· 김상희 · 정춘숙 · 문희상 · 서영교 · 전혜숙 · 최운열 · 유승희 · 송옥주 · 민병두 · 제윤경 · 이수혁 · 김한정 · 신창현 · 이훈 · 위성곤 · 강창일 · 이원욱 · 노웅래 · 김병욱 · 강훈식 · 서형수·박광온 의원 발의)

(이상 4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4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7. 8. 16.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 박의)

(2017. 11. 23. 황주홍·김종회·김철민·송기석· 오세정 · 이찬열 · 김관영 · 김경진 · 윤영일 · 박준영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7. 8. 16. 정부 제출)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7. 9. 14. 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 박덕흠 · 원유철 · 이명수 · 신보라 · 성일종 · 함진규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 김석기 · 이개호 · 김철민 · 정인화 · 박정 · 유영일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7. 9. 12. 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 김명연 · 곽대훈 · 함진규 · 이종배 · 김태흠 · 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7. 9. 22. 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 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 이명수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3. 황주홍·김종회·김철민·오세정· 이찬열·김관영·김경진·윤영일·주승용· 박준영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김성찬·박덕흠·홍문표·김석기· 주광덕·박완수·김태흠·지상욱·윤종필· 이종명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김현권·김영호·김종회·김철민· 박남춘·박주민·박완주·박재호·설훈· 안호영·어기구·위성곤·이개호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이언주·김동철·권은희·김관영· 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선숙· 박주선·신용현·오세정·오신환·유승민· 유의동·이동섭·이찬열·이태규·이학재· 이혜훈·정병국·정운천·주승용·지상욱· 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6. 5. 30. 김성태·강석진·강석호·강효상· 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 김영우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종태 · 김진태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인숙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의동 · 유재중 · 윤상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 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 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 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 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 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 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 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한정애·김경협·변재일·우원식· 원혜영·이인영·이학영·인재근·정성호· 조정식·황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철희·금태섭·이훈·위성곤· 기동민·오영훈·강병원·김종대·송기헌· 박정·채이배·김경수·권미혁·김경진· 조승래·박용진·강훈식·황희·임종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1. 김성태·장제원·윤후덕·신동근· 서형수·정유섭·김학용·민홍철·유승민· 신상진·최도자·양승조·홍철호·김승희· 박덕흠·이학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3. 한정애·인재근·서형수·최명길· 이정미·송옥주·신창현·어기구·강병원· 강훈식·이찬열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7. 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 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 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2. 한정애·어기구·송기헌·제윤경· 권미혁·금태섭·서형수·이용득·박경미· 박재호·손혜원·신창현·송옥주·서영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26. 김삼화·조배숙·김종회·유성엽·

윤영일 · 오세정 · 장정숙 · 최경환(국) · 박주현 ·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 발의)

(2017. 1. 18. 김삼화·조배숙·장정숙·박선숙· 김관영 · 최도자 · 황주홍 · 정인화 · 윤영일 · 오세정·채이배·김광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신창현·이석현·김종민·송기헌· 김현권 · 김상희 · 김경협 · 원혜영 · 박정 · 강병원 · 문미옥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3. 박홍근·신경민·김성수·추혜선· 고용진 · 조승래 · 박주민 · 김해영 · 한정애 · 윤관석·유승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3. 신창현·김경협·김병욱·김철민· 전해철 · 김민기 · 설훈 · 박찬대 · 강병원 · 이수혁 · 한정애 · 어기구 · 안민석 · 이재정 · 송기헌 · 민병두 · 안규백 · 신경민 · 이훈 · 유승희 · 서형수 · 전현희 · 손혜원 · 박정 · 김경수 · 박영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4. 이찬열·황주홍·전혜숙·이동섭· 전현희 · 오제세 · 김해영 · 고용진 · 박정 · 김중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7. 송옥주·노웅래·한정애·이용득· 윤소하 · 인재근 · 정성호 · 김상희 · 서형수 · 김경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7. 9. 8. 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 김정우 · 김철민 · 민홍철 · 박정 · 윤소하 · 인재근 · 정춘숙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송옥주·강병원·김병욱·남인순· 박정 · 신창현 · 윤관석 · 윤종오 · 이용득 · 이원욱·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강병원 · 신창현 · 김정우 · 이정미 · 유관석 · 이용득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 · 노웅래·정성호·서형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9. 이언주·이훈·이찬열·최운열· 최도자 · 이동섭 · 정인화 · 신용현 · 김중로 · 윤영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1. 강병원·신창현·이해찬·김정우· 이정미 · 윤관석 · 이용득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노웅래·정성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 발의)

(2018. 2. 5. 장석춘·황영철·김무성·정유섭· 전희경・박성중・강석호・최교일・유재중・ 김성원 · 신보라 · 이철규 · 강석진 · 문진국 · 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2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화경노동위원장 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이우현·이현재·김순례·추경호· 김성원 · 김성태 · 김현아 · 정종섭 · 주호영 · 권석창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30. 정동영·장정숙·주승용·김관영· 박주현·최도자·김광수·최경환(국)·김종회· 황주홍·손금주·김삼화·김중로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송옥주·이훈·윤관석·이수혁· 박정ㆍ이용득ㆍ유승희ㆍ민병두ㆍ송기헌ㆍ 정성호 · 신창현 · 표창원 · 김한정 · 임종성 · 소병훈 · 서영교 · 권미혁 · 서형수 · 원혜영 · 최운열 · 어기구 · 이원욱 · 문희상 · 한정애 · 강병원·노웅래·홍영표·황주홍 의원 발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6. 12. 21. 정부 제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9. 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 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 박찬우 의원 발의)

# 재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9. 6. 이명수·김성찬·권석창·이정현· 박덕흠·함진규·경대수·박인숙·성일종· 홍문표 의원 발의)

### 재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조정식·홍영표·안호영·정운천· 윤관석·정동영·이춘석·조배숙·전현희· 유성엽·김정우·원혜영·김관영·김종회· 김광수·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3. 정부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8. 권미혁·정춘숙·신창현·추미애· 서형수·손혜원·신용현·김성수·송옥주· 박경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권미혁·이훈·송옥주·최인호· 김두관·강훈식·어기구·강병원·유승희· 김성수·박정·윤종오·김영주·박주민· 박경미·김한정·우원식·남인순·신창현· 임종성·문미옥·최운열·박완주·위성곤· 유동수·이원욱·박찬대·기동민·이철희· 노웅래·설훈·윤후덕·조승래·정재호· 서영교·유은혜·고용진·소병훈·김병욱· 정춘숙·이언주·이정미 의원 발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3. 3. 김승희·임이자·김종석·전희경· 장석춘·김순례·성일종·정유섭·최연혜· 문진국·유민봉·유재중 의원 발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송희경·배덕광·홍영표·최연혜· 이종명·염동열·김승희·주호영·김태흠· 윤종필·김관영 의원 발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 권미혁·남인순·김영호·신창현· 윤관석·추미애·이재정·심기준·박경미· 송옥주·금태섭 의원 발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12. 29. 정춘숙·강훈식·최도자·윤소하· 추미애·신창현·한정애·권미혁·양승조·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 ○의안 철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8. 2. 2. 한선교·나경원·박인숙·송희경· 염동열·윤영석·이명수·이양수·이종배· 정태옥 의원 발의)

2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 ○청원 제출

#### 경기지방 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

(2018. 2. 21. 심옥주 외 783인으로부터 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

(2018. 2.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2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에 관한 청원

(2018. 2. 26.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윤순철 외 1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한 참여연대 청원

(2018. 2. 27.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로부터 김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2월 27일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 위원회에 회부

#### ○청원 심사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

(2017. 9. 15. 박인숙 외 592인으로부터 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2017. 11. 21. 전인숙 외 95,875인으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 ○요구서 제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문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2018. 2. 27. 김동철 의원 외 21인 제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요구서

(2018. 2. 27. 김성태 의원 외 109인 제출)

#### ○서면질문서 제출

자원순환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서

(2018. 2. 22. 박명재 의원 제출)

#### ○서면답변서 제출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2. 22. 정부 제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의사상자 불인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2.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 ○보고서 제출

2018~2022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2018. 2. 20. 정부 제출)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